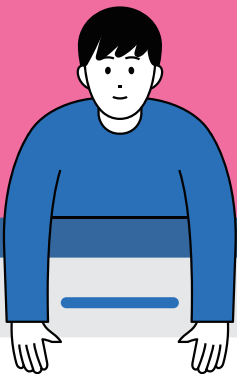


중·고등용 디지털 법교육 Q&A



안전 · 배려 · 공감의 디지털 세상만들기

디지털 소통로 law



법무부





들어가며...

「밤 12시, 모두가 잠든 시각

저는 '투명인간'이라는 아이디로 채팅을 하고 있습니다.

채팅창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친구들도 사귀고 정보도 얻고 해서 채팅을 자주 하거든요.

그런데 요즘 '어린 왕자'라는 아이디가 자꾸 눈에 거슬리는 글을 남기고 있습니다.

'사막여우'라는 아이디는 재미있는 사진이라며 영상을 올리고 웹페이지 링크를 걸어 있습니다.

저는 '사막여우'가 올리는 사진에 관심이 없었는데 한번 클릭해 보니 자극적인 영상이 많았습니다. 링크를 거는 웹페이지도 처음에는 호기심에 들어갔었는데 이상하게 자꾸 클릭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린 왕자'가 올리는 글도 거슬려 몇 번 댓글을 올렸는데 '어린 왕자'가 욕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같이 욕설을 했습니다.

이제는 '사막여우'가 올리는 영상이 계속 보고 싶어졌고, 나한테 욕설을 하는 '어린 왕자'의 신상이 궁금해졌습니다. 저는 '어린 왕자'의 신상을 알기 위해 여기 저기 검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요?

저는 원래 친구들에게 싫은 말도 잘 못하는 성격이고 튀는 행동도 잘 안 하는 편인데 인터넷에만 들어가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인터넷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맺게 되면서 수많은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게 되었고, 세계의 다양한 사람들도 친구로 사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은 초창기 '당신이 가진 정보를 만인과 나누어라'라는 시대 정신 아래 창안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정보가 공유되면서 누군가에게는 시간과 노력을 줄여주는 고마운 세계였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은 '아이디' 뒤에는 내 가족, 친구처럼 실제 인간이 있다는 점을 망각하게 되었고, 현실만큼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아파하거나 상처받는 것이 바로 보이지 않다보니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이 우리 생활에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갈수록 '투명인간' 처럼 행동해서는 우리 모두가 직·간접적으로 가해자·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생활에서도 사람들의 배려와 존중이 있어야 같이 사는 행복한 사회가 되듯이 디지털 공간에서도 타인에 대한 배려와 공감의 있어야 나도



들어가며...

존중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책에서는 디지털 공간에서 흔히 발생하는 법규 위반 사례에 대해 청소년들이 궁금할 만한 질문과 법적인 대처방법을 디지털 성범죄, 사이버 폭력, 디지털 금융범죄, 디지털저작권 네가지 분야로 나누어 알기 쉽게 설명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자가 청소년들이 디지털 세계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알아가며 상대방의 입장과 감정을 공감하고 배려하면서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0. 4.
만든이들의 고민을 담아
정소연 씀



일러두기

일부 법령상 용어는 청소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많이 사용하는 용어로 변경해서 표기하였습니다.

○ 법령상 배포 또는 반포의 용어 ⇨ '유포'로 사용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성폭력처벌법'으로 약칭

- 제13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 성폭력처벌법 통신매체이용음란죄
- 제14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 제14조 제1항 : 성폭력처벌법 카메라등이용 촬영죄
 - ⇨ 제14조 제2항 : 성폭력 처벌법 유포죄
 - ⇨ 제14조 제3항 : 성폭력 처벌법 영리목적 유포죄
- 제14조의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 ⇨ 성폭력처벌법 허위영상물 반포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 '아·청법'으로 약칭

- 제7조 제3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 아·청법 강제추행죄
- 제11조 제1항 내지 제4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음란물제작·배포등)
 - ⇨ 제11조 제1항 : 아·청법 음란물 제작죄
 - ⇨ 제11조 제2항 : 아·청법 영리목적 음란물 배포죄



- ☞ 제11조 제3항 : 아· 청법 음란물 유포죄
- 제11조 제5항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 아· 청법 음란물소지죄
- 제13조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 아· 청법 성매수죄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정보통신망법'으로 약칭

- 제70조 제1항, 제2항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 제70조 제1항, 2항 :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
- 제71조 제1항 제9호, 11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침해죄
- 제74조 제1항 제2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 정보통신망법 음란물유포죄
- 제74조 제1항 제3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 정보통신망법위반죄

CONTENTS



1. 디지털 성범죄

- Q1. 디지털 성범죄는 기존 성범죄와 어떻게 다른가요? 20
- Q2. 디지털 성범죄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22
- Q3. TV에서 '성착취 영상'이라는 말이 자주 쓰이는데,
기존 음란물과 어떤 점이 다른가요? 25
- Q4. 몸캠 피싱이 무엇인가요? 26
- Q5. 고등학생인데, 나체 사진을 찍어 보내주면 문화상품권을
준다고 해서 사진을 찍어 보냈습니다. 신고할 수 있나요? .. 27
- Q6. SNS에서 제가 보낸 신체사진을 유폐하겠다고 합니다.
상대방은 계정이름도 없는 가계정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9
- Q7.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자기 몸을 찍어서 올리는
청소년들이 잘못된 것 아닌가요? 30
- Q8. 트위터 일탈계를 만들어 나체 사진 등을 올렸는데 이런
경우도 음란물 유폐에 해당하나요? 31
- Q9. 학교 친구의 다리와 엉덩이를 몰래 장난으로 찍었습니다.
처벌을 받게 되나요? 32
- Q10. 불법촬영 범죄는 대부분 벌금형을 받지 않나요? 33

Q11. 친구들이 음란물에 다른 사람의 사진을 합성해서 카톡에 올리는데 문제가 되나요?	35
Q12. SNS 게시물에 제 사진을 올렸는데 성적인 댓글이 많이 달렸습니다. 댓글 단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나요?	38
Q13. 친구들이 성희롱을 하고 있는 단톡방에 함께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보기만 했는데도 처벌 받을 수 있나요?	40
Q14. 온라인 게임에서 상대방이 성적인 내용이 담긴 욕설을 했는데 처벌받게 할 수 없나요?	41
Q15. 저는 고등학생인데 SNS로 조건만남을 할 수 있느냐 메시지가 왔습니다. 처벌이 가능한가요?	43
Q16. 인터넷상에서 맘에 드는 사람을 발견해서 쪽지를 보냈는데 연락이 없어서, 혹시 못 보는가 해서 계속 연락을 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나요?	44
Q17. 누가 제 아이디를 사용해서 페이스북에 음란한 사진과 글을 올리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45
Q18. SNS 계정으로 어떤 사람이 저에게 야한사진을 보냈습니다. 처벌받게 할 수 있나요?	46
Q19. 교제했던 친구가 저와의 성관계 영상을 인터넷에 퍼뜨리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48
Q20. 성관계 영상 촬영에 동의했으면 유포되는 것도 자기책임 아닌가요?	50
Q21. 이미 유포된 음란물 영상을 재유포한 경우에도 처벌 받을 수 있나요?	51
Q22.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휴대폰으로 다시 촬영해 전송한 경우 처벌 할 수 있나요?	53

Q23. 외국 성인물 사이트에 음란영상을 배포해도 처벌 받나요?	54
Q24. 친구가 카카오톡으로 재미있는 영상이라며 보내와 아무 생각없이 클릭했는데 불법촬영 영상이었어요. 이런 경우 저는 처벌을 받나요?	55
Q25. 원하지 않는데 자꾸 단독방에 야한 사진을 올리는 친구가 있어요. 너무 불쾌합니다.	56
Q26. 휴대폰으로 야한 사진이 있는 웹페이지 링크를 보내도 처벌 할 수 있나요?	57
Q27. 제 성관계 영상이 인터넷에 있으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58
Q28. 외국에 서버가 있는 다크웹 같은 것도 추적이 가능한가요?	61
Q29.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는 만화나 애니메이션이 포함되나요?	63
Q30. 인터넷에서 아동·청소년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았다가 삭제한 경우도 소지 행위에 해당하나요?	65
Q31. 인터넷에서 아동·청소년음란물을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영상을 다운로드 없이 시청만 했을 경우 처벌을 받나요?	66
Q32.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나요?	67
Q33. 불법촬영된 성범죄 영상은 누구나 신고할 수 있나요?	68
Q34. 저는 미성년자인데 N번방 비슷한 곳에 실수로 입장하 여 시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미성년자인데도 처벌받나요?	70
Q35. 청소년이 디지털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신상등록, 고지, 공개 등이 될 수 있나요?	71
Q36. 청소년이 디지털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나요?	73



2. 사이버 폭력

- Q1. 제 친구의 Facebook 메신저로 모르는 사람이 연락이 와서 저와 성관계를 했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학교에 소문이 퍼져서 너무 괴롭습니다. 남성을 찾아서 처벌할 수 있을까요? 78
- Q2. 사이버 상에서 욕설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80
- Q3. 친구 굴욕 사진을 장난으로 인터넷에 올려도 되나요? 81
- Q4. 반톡에서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모두가 눈물표시(ㅠㅠ)로만 답해요... 제가 사이버 폭력을 당하고 있는 건가요? 82
- Q5. 게임 채팅방에서 제 닉네임에 어떤 사람이 계속 악플을 달아요. 처벌받게 할 수 있나요? 84
- Q6. 친한 친구들끼리 단톡방에서 단톡방에 없는 다른 애를 욕했는데, 그런 것도 사이버 폭력인가요? 85
- Q7. 사이버 폭력을 그만 당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86
- Q8. 같은 반 친구를 수시로 반톡에 불러 괴롭혔는데 그 친구가 담임선생님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되나요? 88
- Q9. 친구가 단체톡에 매일 초대되어 따돌림과 욕설을 당해 밖에 나가기도 무서워하고 스마트폰을 볼 때마다 무서워합니다. 친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이 있나요? .. 91
- Q10. 중학교 1학년 동생이 같은 반 친구들에게 사이버괴롭힘을 당해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가해자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93



3. 디지털 금융범죄

- Q1. 인터넷에서 중고 거래 시 사기를 당하지 않는 방법이 있을까요? 100
- Q2. 저렴한 쇼핑물을 찾았어요. 쇼핑물이 안전한 사이트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102
- Q3. 중고장터에서 사기를 당했는데 어떻게 신고할 수 있나요? 103
- Q4. 부모님이 모르게 사기 당한 것을 신고할 수 있나요? 104
- Q5. 인터넷 사기를 당해 신고를 했는데 앞으로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105
- Q6. 인터넷 사기 피해보상 받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106
- Q7. 인터넷 사기 후 돈을 반환해도 사기죄가 성립 되나요? 107
- Q8. 디지털 금융범죄 '스미싱'이 무엇인가요? 108
- Q9. 디지털 금융범죄 '파밍'이 무엇인가요? 110
- Q10. 고액 아르바이트라고 해서 제 통장을 이용해 입금을 받고 입금된 돈으로 게임 화폐를 구입하는 일을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입금된 돈은 사기 피해자들이 입금한 것이었는데 저도 처벌을 받게 되나요? 112



4. 디지털 저작권

- Q1. 아이돌 안무를 따라 추는 댄스커버 영상을 올리려고 하는데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나요? 119
- Q2. 거리 풍경을 촬영하다 찍은 다른 사람(연예인 등)의 사진을 개인 블로그에 올려도 되나요? 120
- Q3. 내가 만든 영상을 내 유튜브에 올렸는데 저작권 등록을 따로 한 적은 없습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내가 만들었더라도 나에게 저작권이 없는 것인가요? 122
- Q4. 어린 동생이 노래 부르는 장면이 너무 귀여워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저작권 침해인가요? 124
- Q5. 유명한 음악, 영화, 드라마를 패러디해서 영상을 만드는 것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나요? 126
- Q6. 인터넷에서 글을 퍼온 경우, 출처 명시는 사이트 주소를 적어 두면 되나요? 128
- Q7. 출처를 명시하면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이용해도 저작권 문제가 없나요? 129
- Q8. 수능시험 문제나 교과서 등을 해설하는 영상을 자주 볼 수 있는데 교육 목적으로 공개되어 있는 것이므로 자유롭게 사용해도 되는 건가요? 130
- Q9. 블로그에 사용할 이미지가 필요한데,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이미지는 어떻게 찾나요? 132

Q10. 개인 채널에서 스포츠 중계 방송을 하고 싶은데 지상파 중계 영상을 수신하여 내 목소리를 더빙하면 문제가 될까요?	133
Q11. 현재 게임 방송을 하면서 게임 홍보에 많은 도움을 줬다고 생각하는데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135
Q12. 유튜브나 아프리카TV 저작권 필터링에 걸리지 않았으면 걱정 안 해도 되나요?	136
Q13. 취미로 유튜브에 케이팝(K-Pop) 영상을 올렸는데 저작권 침해로 고소되었다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137
Q14. 내가 만든 UCC를 다른 사람들이 자유롭게 쓰게 하고 싶은데, 내가 만든 UCC란 걸 밝혔으면 좋겠고 이것으로 돈을 버는 사람은 허락을 받게 하고 싶어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139
Q15. 내가 만든 UCC가 다른 사람의 저작물과 비슷하다고 저작권 침해 경고장이 왔어요. 나는 그 저작물을 처음 보는데요. 저작권 침해로 처벌 받나요?	141
Q16. 음원을 블로그의 배경음악으로 이용하려고 합니다. 이때에도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음원사이트에서 돈을 내고 음악을 다운로드한 경우에도 다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142
Q17. 가사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가사를 음악 저작물에 이용하지 않고 인터넷에 게재하는 때에도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143
Q18. 해외 음란물 제작업체들이 국내에서 음란물을 공유한 네티즌들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했는데 유통 자체가 금지된 음란물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가요?	144
Q19.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한 이미지를 친한 친구한테 개인 메일로 전송해도 저작권법에 저촉되나요?	145
Q20. 웹하드나 파일 공유 프로그램을 자주 이용하는데 모두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나요?	147

Q21. 유튜브에 업로드 되어 있는 동영상 소스코드를 퍼와서 홈페이지에서 보여줘도 되나요?	149
Q22. 블로그에 내가 좋아하는 화가 이중섭의 작품을 게시하고 싶는데 저작권이 문제되나요?	150
Q23. 블로그에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을 게시하고, 모차르트 클래식 음악을 배경으로 하고 싶는데 저작권이 문제되나요?	151
Q24. 홈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 이용금지 표시가 없는 폰트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사용했는데, 법무법인에서 보낸 내용증명을 받았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153
Q25. 내가 유료로 수강하는 인터넷 강의를 촬영하거나 녹음한 파일을 인터넷에 업로드하거나 친구들과 공유하면 저작권이 문제되나요?	155
Q26. 친구와 놀러갔다가 멋진 건축물, 동상이 보여서 사진 촬영했는데, 블로그에 올려도 되나요?	156

5. 부록

[부록 1] 아동·청소년이 알아야 할 디지털성범죄 예방 7가지 안전 수칙	160
[부록 2] 보호자가 알아야 할 디지털성범죄 예방 7가지 안전 수칙	161
[부록 3] 디지털 범죄 적용 법률	162



1. 디지털 성범죄



1. 디지털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란?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입니다. 동의 없이 상대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촬영된 영상물을 동의 없이 유포(반포·판매·임대·전시·상영)하는 행위 및 사이버 공간에서 유포, 협박, 성희롱 등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 종류

불법촬영

치마 속, 뒷모습, 전신, 얼굴 등 성행위 등

비동의 유포, 재유포

웹하드, SNS 등에 업로드, 단독방에 유포

유통, 공유

웹하드, SNS 등의 사업자 및 이용자

유포협박

가족이나 지인에게 유포하겠다는 협박, 이별 후 재회를 요구하며 협박, 금전요구 등

사진 합성

피해자의 일상적 사진을 성적인 사진과 합성 후 유포 (지인능욕)

성적 괴롭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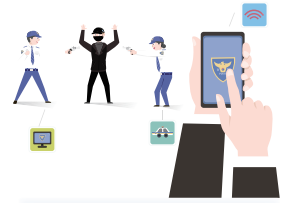
사이버 공간 내에서 성적 내용을 포함한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의 행위

1 비동의: 다른 사람의 행위를 승인하거나 시인하지 않음.



■ 신고 방법

피해촬영물, 대화내용 캡처, 유포된 사이트, 아이디 등 증거 확보 상담신청 및 경찰서 등 신고



■ 피해자 상담기관

사건을 수사해주세요

경찰(112, 117)

앱(스마트국민제보), 학교전담경찰관

영상 유포를 막아주세요

경찰(112, 117)

앱(스마트국민제보), 학교전담경찰관

상담을 받고싶어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02-735-8994 (www.women1366.kr/stopds)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388, www.cyber1388.kr
여성긴급전화	1366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02-817-7959, hotline@cyber-lion.com
한국성폭력상담소	02-338-5801
십대여성인권센터	010-3232-1318, 카톡: cybersatto



Q.1

디지털 성범죄는 기존 성범죄와 어떻게 다른가요?

A

답변

디지털 성범죄도 성폭력 범죄의 한 유형에 해당하여 성폭력 범죄로 처벌됩니다. 다만 기존 성범죄와 달리 몇 가지 특수성이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가 기존 성폭력과 가장 다른 점은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신체적 가해가 없이 발생하지만 전 세계가 인터넷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피해가 무제한으로 확대되며, 영구삭제가 거의 불가능하여 사생활 침해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힌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촬영, 시청, 다운로드, 댓글 성희롱 등 무수한 가해자가 존재하고, 다수의 익명 동조자들로 인해 범죄에 대한 인식이나 죄책감이 적다는 특성도 있으며, 디지털기기 사용 연령이 점점 낮아지면서 가해자의 연령대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촬영'의 경우처럼 불특정 다수가 피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고, 자신이 피해자라는 사실을 모르거나 인지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디지털에서의 성범죄 또한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범죄라는 것을 명심하고,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져야겠습니다.





Q.2

디지털 성범죄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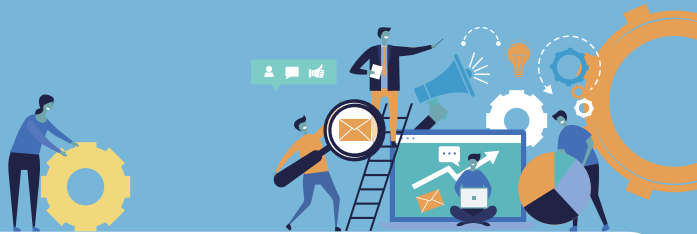
A 답변

디지털 성범죄도 성폭력범죄의 한 유형이므로, 성폭력범죄와 마찬가지로 징역형, 벌금형 등으로 처벌받는 외에도 수강명령 및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 해설 Explanation

● 디지털 성범죄 처벌조항

- ☞ 다른 사람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 이용 촬영 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
- ☞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물을 허락 없이 온라인 상에 업로드하거나, SNS로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거나, 출력하여 유포한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유포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돈을 벌기위해 유포한 경우에는 영리목적 유포죄로 처벌이 가중되어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셀카로 본인의 신체를 촬영한 것을 전송받아서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허락 없이 그 영상물을 유포하면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 ☞ 피해자에게 셀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경우
형법 제283조 협박죄로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협박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유포한 경우에는 협박죄와 성폭력처벌법으로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 ☞ 청소년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성적영상물을 직접 찍어서 보내도록 하는 경우 아·청법 제11조 제1항 음란물 제작죄로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위 양태에 따라 아·청법 제7조 제3항의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 청소년 피해자로부터 받은 영상물을 유포하는 경우
아·청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유포죄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유포한 경우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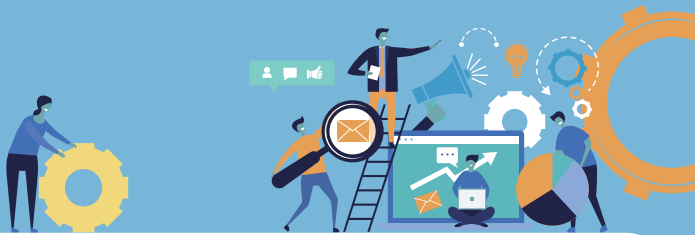
디지털 성범죄



- ☞ 불법촬영물이 아닌 아동, 포르노 영상물을 올리는 것도 정보통신망법 음란물유포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 아동청소년이 대상인 영상물은 휴대폰, 컴퓨터, USB, 클라우드 등 어느곳이든지 가지고만 있어도 아·청법상 음란물소지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 SNS 등 인터넷에서 성희롱 댓글, 외모 품평 문자메시지, 찌라시 등을 올리기만 해도 형법상 명예훼손죄, 모욕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례)

집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치마가 올라가 엉덩이 부분이 노출된 것을 보고, 가해자가 자신의 휴대폰으로 엉덩이와 허벅지를 촬영한 사건에서 법원은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Q.3

TV에서 '성착취 영상'이라는 말이 자주 쓰이는데, 기존 음란물과 어떤 점이 다른가요?

A 답변

'음란물'이라는 용어는 피해자가 아닌 생산자, 소비자의 입장만을 고려한 것입니다.

'성착취 영상'은 영상에 등장한 대상자가 아동·청소년이거나, 협박 등에 의해 촬영한 영상으로, 성적인 이미지의 촬영이나 배포를 '학대'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피해자 및 피해자와 관련된 사람을 위협·협박하고 조종하기 위해 사용되어 성착취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음란물'은 성착취 영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고 심각한 범죄로 인식할 필요가 있어 '성착취'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Q.4

몸캠 피싱이 무엇인가요?

A 답변

몸캠 피싱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어플을 통해 영상채팅을 하자고 접근하거나, 호감을 갖도록 한 후 음란행위를 유도하는 방식의 피싱입니다.

악성코드가 담긴 프로그램을 상대에게 설치하도록 한 뒤 휴대전화에 담긴 모든 전화번호를 해킹해 간 후, 피해자의 알몸 등이 노출된 음란 동영상을 그 전화번호로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빼앗거나 불법행위를 강요하기도 합니다.

몸캠 피싱에 당하지 않으려면, 랜덤 채팅 또는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채팅할 때 어플이나 특정한 파일 설치를 요구하는 경우 조심해야 하고, 몸캠 피싱을 당했을 때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Q.5

고등학생인데, 나체 사진을 찍어 보내주면 문화상품권을 준다고 해서 사진을 찍어 보냈습니다. 신고할 수 있나요?

A 답변

아·청법에 의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경우 소지한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청소년이 동의해서 거래했다 하더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나눈 대화내용, 아이디, 보낸 영상들을 지우지 말고, 상대방이 계정에서 탈퇴할 것을 대비해 미리 캡처한 후,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세요.



해설

Explanation

● 그루밍 성범죄

성폭력에서의 그루밍은 성착취를 수월하게 하고 범죄의 폭로를 막기 위해 신뢰를 쌓거나, 성적 가해 행동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 대인관계 및 사회적 환경이 취약한 대상에게 다양한 통제 및 조종 기술을 사용해 범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방이 호감을 표시하며 선물이나 용돈을 주겠다고 접근하거나, 신체 사진 또는 영상을 전송해 달라고 하는 경우, 디지털 성범죄 피해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사례)

영상 채팅으로 알게 된 청소년에게 '그루밍 수법'을 이용해 나체 사진과 동영상 파일을 받은 사안에서 법원은 아동·청소년음란물소지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Q.6

SNS에서 제가 보낸 신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합니다. 상대방은 계정이름도 없는 가계정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답변

신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을 하는 경우 실제로 사진을 인터넷에 퍼뜨리지 않아도 형법상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신체 사진이 유포될까봐 두려워 가해자가 시키는 대로 행동하면 그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으므로 곧바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계정 이름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에 신고하면 사이버수사대를 통해 가해자의 신원이 확인될 수 있으므로, 유포하겠다는 협박내용을 캡처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02-735-8994, www.women1366.kr/stopds)를 통해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여성긴급전화(1366)에서 언제든지 성폭력 등으로 인한 피해상담 및 구조,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Q.7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자기 몸을 찍어서 올리는 청소년들이 잘못된 것 아닌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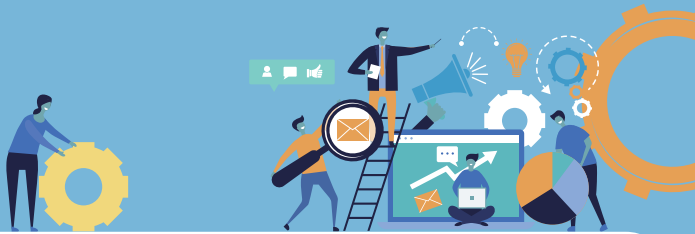
A 답변

아동·청소년은 성인과 달리 정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자기방어능력이 부족해서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정신적으로 제압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자기 몸을 찍어서 올리는 일부 청소년의 행동이 올바른 것은 아니지만, 이런 점을 악용해 범죄의 대상으로 만드는 가해자들은 훨씬 더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가해자들은 피해자 스스로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점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이후 피해자를 길들여 성착취 행위를 수월하게 하고, 범죄의 폭로를 막기 위해 대인관계 및 사회적 환경이 취약한 대상에게 다양한 통제 및 조종 기술을 사용하여 성착취를 합니다.

성범죄 피해자에게 스스로 원인을 제공했다고 비난하는 것에만 초점을 두게 되면 피해자들에게 자책감을 느끼게 하고, 신고를 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갖게 만들 수 있습니다.



Q.8

트위터 일탈계를 만들어 나체 사진 등을 올렸는데 이런 경우도 음란물 유포에 해당하나요?

A 답변

'음란'이란 사회통념상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해서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보통신망인 트위터에 호기심이나 일탈로써 일탈계정을 만들어 나체 사진을 올렸다면 정보통신망법 음란물유포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Q.9

학교 친구의 다리와 엉덩이를 몰래 장난으로 찍었습니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답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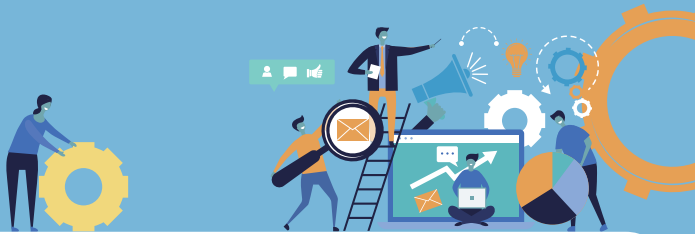
당사자의 동의 없이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를 촬영하는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촬영한 이상, 영상물이 저장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카메라 등이용촬영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유사질문

지하철계단에서 친구와 동영상찍는 장난을 하다가 치마입은 여성분이 우연히 찍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많은 가해자들이 그런 변명을 합니다. 장난치다 우연히 찍었다면 '우연히' 촬영된 것이라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미 치마입은 여성의 하체부위가 촬영되었기 때문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계단에서 친구와 동영상 찍는 장난은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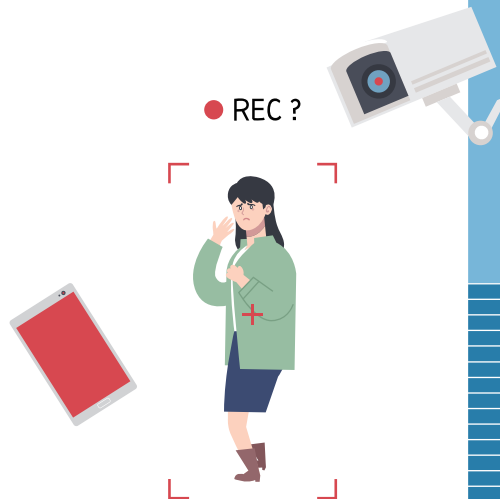
Q.10

불법촬영 범죄는 대부분 벌금형을 받지 않나요?

A 답변

2018년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기소된 성범죄 중 50%는 벌금형을, 12%는 실형을, 38%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다른 범죄행위 등으로 집행유예가 취소되면 실형을 복역해야 합니다. 또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벌금형을 받을 뿐만 아니라, 최장 10년간 신상정보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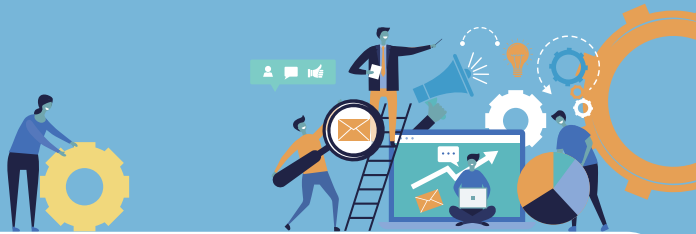
Explanation

● 불법촬영 범죄

불법 촬영은 이미지를 기록하는 기기를 이용해 촬영대상자의 허락 없이 촬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는 일명 ‘몰카(몰래 카메라)범죄’라고 불렀지만, ‘몰카범죄’라는 용어가 심각한 피해를 일으키는 범죄에 사용하기 적절하지 않아서 이제는 ‘불법 촬영’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Q.11

친구들이 음란물에 다른 사람의 사진을 합성해서 카톡에 올리는데 문제가 되나요?

A 답변

일반인의 얼굴사진에 타인의 알몸 사진 등을 합성한 합성음란물을 ‘딤페이크’ 영상물이라고 합니다. ‘지인능욕’이라는 용어로 지칭되기도 하며 대상자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글과 함께 게시되기도 합니다.

딤페이크 영상물 등을 제작하거나 이를 배포하는 경우 예전에는 명예훼손 또는 음란물유포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해당 법조로 처벌이 가능하였으나,

2020. 6. 25.부터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2에 따라,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영상물등’이라 함)을 영상물등의 대상자 의사에 반해서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고,



반포 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영리를 목적으로 반포 등을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됩니다.

● 유사질문 1

친한 친구가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을 야한 사진에 합성한 사진을 카톡으로 보여줬습니다. 처음에는 합성사진인지 구분하기 쉽지 않았지만 친구가 합성사진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것은 합성사진이라서 범죄와 아무 관련 없다고 저에게 더 보내줄까? 라고 물었습니다. 친구말대로 합성한 것은 죄가 되지 않나요?

[답변]

공인이나 연예인이라고 하더라도 인격이 있고, 명예가 있습니다.

지인의 사진을 야한사진에 합성한 것이 범죄가 되듯 연예인의 얼굴을 야한 사진과 합성하는 것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편집하거나 유포하지 않더라도 해당 연예인이 아동·청소년이라면 아·청법상 음란물소지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유사질문 2

저는 중학생인데요, '지인능욕'이라는 걸 제가 당하게 될 줄 몰랐어요. 제 얼굴에 음란물에서 나오는 사람의 몸을 합성해서 단톡방에 올랐던 것을 알게 되었어요. 사진들을 다 삭제하고, 신고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딥페이크 영상물을 단톡방에 올리는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먼저 수사기관에 신고해서 단톡방에 참가한 사람들 중 누가 단톡방에 올렸는지, 올랐던 영상물을 제3자에게 재유포한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영상물 삭제 요청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 www.women1366.kr/stopds)나 수사기관에 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삭제 요청을 할 때는 피해 신고가 전제되어야 하지만,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 www.women1366.kr/stopds)는 피해 신고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



Q.12

SNS 게시물에 제 사진을 올렸는데 성적인 댓글이 많이 달렸습니다. 댓글 단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나요?

A 답변

성적인 댓글이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이라면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성적인 내용 외에도 거짓사실이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할만한 내용일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고, 욕설 등을 담은 내용일 경우에는 형법 제311조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유사질문 1

유튜브 채널에 저와 제 친구들이 출연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뒤에 가보니 모르는 사람들이 성적인 댓글을 많이 달아서 기분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을 신고할 수 있을까요?



● 유사질문 2

인스타그램에 제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사람들이 제 신체 일부에 대해서 조롱을 하면서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의 댓글을 많이 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을 신고하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공동답변]

성적인 댓글의 정도에 따라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댓글 내용, 게시 일시, 아이디를 캡처하여 수사기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Q.13

친구들이 성희롱을 하고 있는 단톡방에 함께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보기만 했는데도 처벌 받을 수 있나요?

A 답변

단톡방에서 성희롱을 하는 친구들을 보고만 있었다면 처벌을 받지 않겠지만, 친구들을 제지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적극적인 가담을 하지는 않았지만 웃음을 나타내는 기호를 표기하는 등의 행동을 했다면 내용 및 가담 정도에 따라,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죄, 제311조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고,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Q.14

온라인 게임에서 상대방이 성적인 내용이 담긴 욕설을 했는데 처벌받게 할 수 없나요?

A 답변

인터넷 게임 내에서 성적인 내용이 담긴 욕설을 전송했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할 수 있으며, 성적수치심을 일으킬 정도는 아니지만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공연성의 인정여부에 따라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친고죄**²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런 사건이 발생하고 6개월 이내에 수사기관에 고소하여야 합니다. 욕설을 한 증거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아이디와 게임 내 닉네임 등 수집 가능한 정보들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친고죄 : 범죄의 피해자, 기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검사가 형사사건에 대해 법원의 재판을 청구하는 신청)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합니다.



해설

Explanation

- 성적 수치심, 혐오감의 의미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보통사람들의 성적 도덕관념을 넘어선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씨##” 이라는 욕설만 했을 경우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보다는 모욕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Q.15

저는 고등학생인데 SNS로 조건만남을 할 수 있냐는 메시지가 왔습니다. 처벌이 가능한가요?

A 답변

조건만남은 성매매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비록 직접 성매매를 하지 않았더라도 아동·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게 되면 아·청법상 성매수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문자메시지, 상대방 연락처 등 증거와 함께 경찰서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후에도 계속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연락이 온다면,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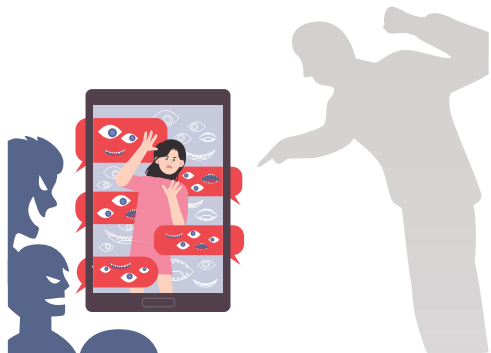
Q.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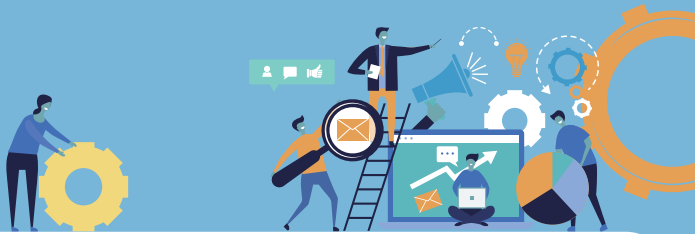
인터넷상에서 맘에 드는 사람을 발견해서 쪽지를 보냈는데 연락이 없어서, 혹시 못 보는가 해서 계속 연락을 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나요?

A 답변

여러 번 쪽지를 보냈는데 상대방이 연락을 하지 않는 것은 싫다고 거절하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싫어하는데도 계속 전화나 문자를 보내는 것은 스토킹에 해당하므로 중단해야 합니다

거절 의사를 표현했는데도 상대의 의사에 반해 계속 연락을 취했다면,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에 해당하여 징역1년 이하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Q.17

누가 제 아이디를 사용해서 페이스북에 음란한 사진과 글을 올리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답변

다른 사람의 아이디를 도용한 경우, 아이디를 도용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비밀을 침해한 경우는 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1항 제9호 및 11호 정보통신망침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이디를 도용해서 페이스북에 음란한 사진과 글을 올렸다고 하더라도 페이스북 계정을 본 사람들은 도용당한 사람이 직접 올린 것으로 착각할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에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음란물유포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캡처를 하여 증거를 확보한 후 바로 수사기관 및 페이스북에 피해신고를 하시고,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변경하거나 계정을 탈퇴하는 것이 좋습니다.



Q.18

SNS 계정으로 어떤 사람이 저에게 야한사진을 보냈습니다. 처벌받게 할 수 있나요?

A 답변

야한 사진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만한 사진이라면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되어 처벌받게 할 수 있습니다.

● 유사질문 1

제가 채팅을 하고 있는데 상대 여자가 저의 야한 사진을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너무 황당한데 이런 상황에서도 제가 처벌을 받나요?

[답변]

상대방의 요청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만한 증거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세요. 야한사진이 음란한 영상에 해당할 경우에 이를 공유하면 정보통신망법 음란물유포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유사질문 2

실수로 SNS 계정에서 친구에게 야한사진을 전송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전송받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야한사진이 실수로 온 것인지, 고의로 온 것인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정말로 실수로 전송했다면 그 친구가 보기 전에 즉시 삭제하고, 이미 친구가 봤다면 실수임을 안 순간 곧바로 친구에게 용서를 구하고 즉시 삭제할 것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그 친구가 용서하지 않고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Q.19

교제했던 친구가 저와의 성관계 영상을 인터넷에 퍼뜨리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답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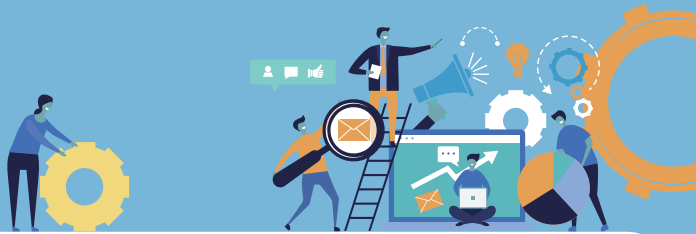
헤어지면서 성관계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한 것은 협박죄에 해당합니다. 유포할 게 두려워 신고하지 않는다면 계속하여 협박을 당하거나, 또 다른 피해를 불러올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E 해설

Explanation

성관계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하는 경우 실제 성관계 영상을 인터넷에 퍼뜨리지 않아도 형법상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협박 죄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교제했던 친구가 동의없이 성관계 영상을 촬영했다면 카메라등 이용촬영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해당 동영상을 실제 유출하지 않았어도 촬영한 행위 자체 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 유사질문 1

전 남자친구에게 헤어지자고 말을 했는데 헤어지면 저와 찍은 성관계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합니다.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리벤지포르노'라고 하는데 너무 무서워서 잠도 안옵니다. 남자친구를 처벌하고 영상을 삭제할 수 없을까요?

[답변]

헤어지면 성관계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한 것은 협박죄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유포할 게 두려워 신고하지 않는다면 계속하여 협박을 당하거나, 또 다른 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남자친구의 협박을 녹음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캡처하여 수사기관에 신고하면 수사기관에서 압수·수색을 통해 남자친구가 보관하고 있는 성관계 영상을 찾아서 몰수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유사질문 2

성관계 촬영물을 실제 유포하지는 않고 겁을 주려고 유포하겠다고 이야기한 것만으로도 문제가 되나요?

[답변]

협박은 가해자가 실제로 해악을 실행할 의사가 있었는지 보다는, 가해자가 해악을 실현할 의사가 있다는 인상을 주었고, 피해자가 그 해악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하면 충분하므로 이야기만 한 경우에도 협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Q.20

성관계 영상 촬영에 동의했으면 유포되는 것도 자기책임 아닌가요?

A 답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제1항에서는 촬영 대상자의 동의 없는 촬영을, 제2항에서는 동의 없는 반포 등을 벌하도록 규정하여 각각 처벌하고 있습니다.

촬영에 대한 동의가 유포에 대한 동의까지 당연히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촬영 당시에는 촬영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동의하에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했다고 해서 비난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신뢰를 저버리고 동의없이 유포한 가해자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할 수 있습니다.





Q.21

이미 유포된 음란물 영상을 재유포한 경우에도 처벌 받을 수 있나요?

A 답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정보통신망법 음란물유포죄에 따르면 이미 유포된 영상을 재유포한 경우에도 유포죄로 처벌됩니다.

판례도 정보통신망을 통해 급속도로 확산되는 피해는 누가 유포하든 동일하며, 재유포하는 행위들로 인해 피해자의 피해는 영원히 계속된다는 점에서 최초 유포자와 동일하게 처벌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사례)

인터넷에서 파일 공유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음란물을 다운받은 사실만으로 처벌 대상이 된 사례가 있는데, 파일 공유 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 다운로드와 업로드가 동시에 진행되어 다운로드 하는 것만으로도 유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유포된 음란물이라 하더라도 이를 재유포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광범위하게 다시 확산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유포와 같은 정도의 위험성과 책임이 있어 처벌되는 것입니다.



Q.22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휴대폰으로 다시 촬영해 전송한 경우 처벌 할 수 있나요?

A 답변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컴퓨터로 재생한 후, 그 화면을 다시 촬영해 다른 사람에게 전송한 행위는 성폭력 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유포행위에 해당하여 처벌이 가능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죄) 제2항은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아도 사후에 그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Q.23

외국 성인물 사이트에 음란영상을 배포해도 처벌 받나요?

A 답변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하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유포죄로 처벌됩니다. 이때 유포된 인터넷 사이트가 국내이든 국외이든 상관없이 모두 유포죄로 처벌됩니다.

불법촬영물이 아닌 음란물을 외국에 있는 사이트에 유포해도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음란물유포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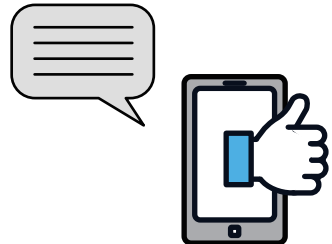
Q.24

친구가 카카오톡으로 재미있는 영상이라며 보내와 아무 생각없이 클릭했는데 불법촬영 영상이었어요. 이런 경우 저는 처벌을 받나요?

A 답변

불법촬영영상물을 시청만 한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카카오톡으로 동영상을 시청하려면 다운로드를 받아야만 시청할 수 있으므로 카톡방에서 나갔다고 하더라도 앱 내부에 동영상이 저장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영상물이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영상물일 경우에는 아·청법 제11조에 의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영상물을 보낸 친구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유포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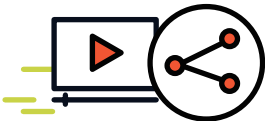
Q.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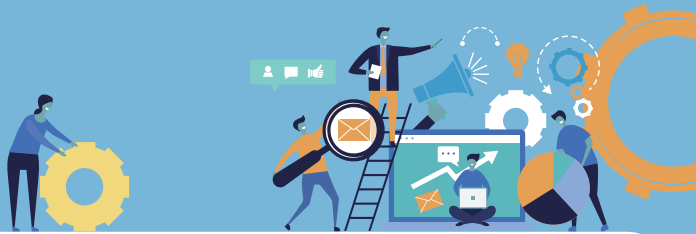
원하지 않는데 자꾸 단톡방에 야한 사진을 올리는 친구가 있어요. 너무 불쾌합니다.

A 답변

단톡방에서 상대방이 원치 않는데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 그림, 영상 등을 올리면 성폭력 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톡방은 정보통신망에 해당하므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음란물유포죄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단톡방을 나갈 수 없다면 학교 선생님에게 학교폭력으로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Q.26

휴대폰으로 야한 사진이 있는 웹페이지 링크를 보내도 처벌 할 수 있나요?

A 답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을 피해자에게 직접 전송한 것뿐만 아니라 해당 사진을 볼 수 있는 링크를 전송한 경우에도 유포에 해당하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상대방이 링크를 클릭하지 않더라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

대법원은, 피해자의 나체 사진 2장이 저장되어 있는 드롭박스 애플리케이션에 접속 가능한 인터넷 주소를 피해자의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송한 사건에서, 상대방이 이러한 링크를 이용하여 별다른 제한 없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에 바로 접할 수 있게 되었다면 그러한 행위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것으로 본다고 판결했습니다.



Q.27

제 성관계 영상이 인터넷에 있으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A 답변

자신의 동의 없이 촬영된 불법촬영물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등이용 촬영죄에 해당하므로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에 촬영된 성관계 영상이라고 하더라도 동의 없이 유포한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유포죄로 처벌됩니다.

인터넷 공간은 게시자가 자료를 삭제할 경우 증거자료 확보가 곤란하므로,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유포 사이트, 아이디, 게시물 번호나 제목, 영상이 촬영된 일시와 장소 등의 자료를 신속하게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 유포된 불법촬영물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이 접근하므로, 완벽한 삭제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관련 지원 단체를 통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재유포에 대한 삭제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의 배우자, 부모, 형제자매도 삭제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 해설

Explanation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 ① 국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촬영물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삭제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성폭력행위자가 부담한다.
- ③ 국가가 제1항에 따라 촬영물 삭제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 제2항의 성폭력행위자에 대하여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촬영물 삭제 지원의 내용·방법, 제3항에 따른 구상권 행사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상담가능 기관

여성긴급전화 1366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cyber-lion.com 02-817-7959

나무여성인권상담소 www.namuright.or.kr 02-2275-2201

한국성폭력상담소 www.sisters.or.kr, 02-338-5801

한국여성의전화 www.hotline.or.kr, 02-2263-6465



삭제지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
02-735-8994(평일 10시~17시), www.stop.or.kr

● 유사질문

친구가 불법영상물에서 저를 본 것 같다고 해서 확인해봤는데, 제가 맞는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성관계 장면이 촬영되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먼저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최대한 신속하게 수집한 후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포된 영상물의 삭제를 위해서는 관련기관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 (대표전화) 02-735-8994, www.stop.or.kr 에서 무료로 삭제를 지원하고 있으니 도움을 받으세요.

삭제 지원은 수사기관에 먼저 신고하지 않고도 바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Q.28

외국에 서버가 있는 다크웹 같은 것도 추적이 가능한가요?

A 답변

가능합니다. 외국의 수사기관과 ‘형사사법공조³’와 ‘범죄자인도법⁴’에 의해 외국에 서버가 있더라도 다크웹 운영자를 검거할 수 있습니다.

외국에 서버가 있는 텔레그램과 같이 보안성이 강한 프로그램이라고 하더라도 ‘디지털 포렌식⁵’이라는 기술을 활용한다면 대화방 기록, 입금 내역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크웹 또한 다크웹 상의 설정 실수나 취약점을 이용해 IP나 이메일 정보를 알아낼 수 있는 기술들이 존재합니다. 보안 기술이 발달하는 만큼 우리 수사

- 3 국제형사사법공조 : 형사사건에 있어서 수사·기소·재판절차와 관련하여 어느 한 국가의 요청에 의해 다른 국가가 행하는 형사사법상 협조를 말합니다.
- 4 범죄자인도법 :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외국으로 도망친 경우에 우리나라의 청구에 의해 외국에서 범죄자를 인도하는 법을 말하는 것으로,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우리나라로 도망온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범죄자를 인도해줄 수 있습니다. 범죄인을 인도할 때는 국가간의 약속(조약)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 5 디지털 포렌식 : 포렌식이란 범죄 수사에 사용하는 과학적 수단이나 방법을 말하고, 디지털 포렌식이란 삭제된 데이터 로그를 추적해서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수사기법을 말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기관의 역량도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수사를 통해 드러나지 않는 범죄는 없게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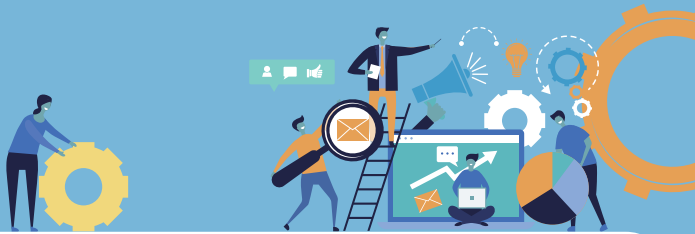


(사례)

미국과 한국, 영국 등 38개국 수사기관이 공조수사를 벌여 한국에 서버를 둔 아동음란물 사이트를 이용한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2명을 포함 전세계적으로 330여명을 한꺼번에 모두 잡았습니다.

연방법무부는 16일 지난 2017년 9월부터 한국에 서버를 두고 다크웹(DARK WEB)에 개설한 아동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 한국인 손모씨와 미국 등 38개에서 이 사이트를 이용한 337명이 체포됐으며, 한국 경찰청,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국세청(IRS)·연방검찰청, 영국 국가범죄청(NCA) 등의 공조로 이번 수사는 진행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미주한국일보 '19. 11.)



Q.29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는 만화나 애니메이션이 포함되나요?

A 답변

포함됩니다.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서 법 제2조 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 필름, 비디오물, 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이라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실제 인물이 등장하는 동영상과 사진뿐만 아니라 만화나 애니메이션도 이에 해당됩니다.

만화나 애니메이션의 형태라 하더라도 아동·청소년의 성적행위를 묘사한 영상물은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에 해당되어 소지·배포·판매 등의 행위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

대법원은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등장하고 이들의 성행위를 묘사한 애니메이션 영상에 대해 특정 신체부위가 다소 성숙하게 묘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보아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에 해당한다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고 판결한바 있습니다.



Q.30

인터넷에서 아동·청소년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았다가 삭제한 경우도 소지 행위에 해당하나요?

A 답변

소지 행위에 해당합니다.

다만, 아동·청소년음란물소지죄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소지한 경우에 처벌합니다.

따라서 아동음란물인줄 모르고 다운받았다가 삭제한 경우, 즉 고의로 하지 않은 경우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아동음란물인줄 알면서 다운받았다가 삭제한 경우에는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죄로 처벌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의 영상은 다운로드하여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고, 파일 공유 프로그램의 경우 파일을 다운로드 하는 동시에 해당 파일이 업로드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는 유포죄로 처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성착취 영상의 경우 위와 같은 행동들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확산하는 명백한 2차 가해이니 가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Q.31

인터넷에서 아동·청소년음란물을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영상을 다운로드 없이 시청만 했을 경우 처벌을 받나요?

A 답변

단순히 시청만 했을 경우는 처벌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에서 동영상을 시청하려면 다운로드를 받아야만 시청할 수 있으므로 시청하는 순간 자동으로 다운로드가 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시청했던 임시파일이 해당기기에 남아있는 경우 소지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N번방 사건'의 심각성과 중대성을 고려하여 향후 단순히 시청했을 경우도 처벌할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 법개정에 대해 논의 중입니다.

현행법상 처벌되지 않는다고 해서, 잘못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불법촬영물이나 음란물을 유포·유통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단순히 소비하는 것도 디지털 성범죄의 일종이라는 것을 인지해야겠습니다.



Q.32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신고
하면 포상금을 주나요?

A 답변

아·청법 제59조에 의하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매매, 강요, 알선 등의 행위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70만원~100만원)

수사기관에 관련 내용을 신고하여 일정 처분(기소 등)이 있은 후에, 여성가족부(아동청소년성보호과)에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관련 부처에서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신고에 대해서도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러한 신고제를 활용한다면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에 대한 사회적 감시를 강화할 수 있고, 신종 온라인 성범죄에 보다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관심이 우리 사회의 아동·청소년을 안전하게 지키는데 큰 힘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Q.33

불법촬영된 성범죄 영상은 누구나 신고할 수 있나요?

A 답변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 아닌 제3자가 고발할 경우 수사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신고자의 정보 보호는 수사기관의 의무이고 익명으로 신고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유사질문 1

우연히 불법촬영된 야한 동영상을 인터넷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법 촬영인 것 같아 신고하고 싶어요. 저도 신고가능 한가요? 혹시 제가 시청해서 저도 처벌되는 것 아닌가요?

[답변]

불법촬영물은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연히 불법촬영물인줄 모르고 시청한 것이라면 현행법상 처벌되지 않습니다.

● 유사질문 2

인터넷에서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야한 동영상을 시청하였습니다. 제가 보려고 한 건 아닌데 보다보니 아동·청소년이라서 깜짝 놀랐습니다. 신고를 하고 싶은데 저도 아동청소년이 나온 동영상을 시청해서 같이 처벌받지 않을까 고민이 됩니다.

[답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동영상의 신고를 한 경우 신고자가 아동청소년이 음란물임을 모르고 단순 시청한 것이라면 현행법상 처벌되지 않습니다.



Q.34

저는 미성년자인데 N번방 비슷한 곳에 실수로 입장하여 시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미성년자인데도 처벌받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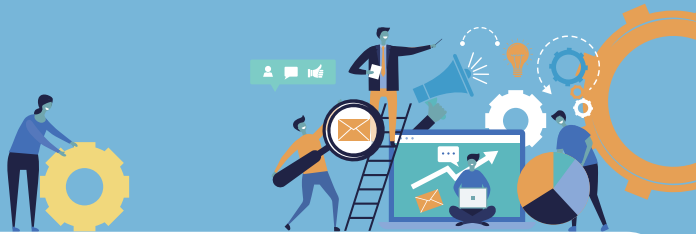
A 답변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14세 이상인 경우에는 N번방에 입장하여 아동음란물을 시청했을 경우 구체적인 시청 방법에 따라서 음란물소지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경우에도 보호관찰, 소년원 등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 N번방 등 채팅방에 입장하기 위해서는 해당 방의 링크를 전송받아 입장하거나, 특정한 가입조건(유료 등)을 충족해야만 입장하는 등 다양한 방들이 존재합니다.

특정한 가입조건을 충족해야만 입장이 가능한 방에 입장하였다면 그곳에서 이루어진 각종 불법행위들(협박, 강요, 아동청소년음란물제작 및 배포죄)의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링크를 전송받아 실수로 입장하였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그 방에서 탈퇴하지 않고 계속 남아 있으면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시청하였다면 아·청법에 규정한 소지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Q.35

청소년이 디지털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신상 등록, 고지, 공개 등이 될 수 있나요?

A 답변

신상정보 등록은 가능하며 공개·고지는 안됩니다. 청소년보호법과 아·청법상 청소년은 19세 미만자를 말하지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하는 자는 청소년에서 제외됩니다.

〈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디지털 성범죄를 포함한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이 판결을 받기 전에도 성폭력처벌법상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특정강력범죄처벌법상 범행수법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며,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등록〉

재판이 확정되면 형의 종류에 따라 10년부터 30년까지 기간동안 가해자의 신상(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등록됩니다.

등록된 정보는 법무부에서 관리하며, 범죄예방·수사에 활용되고 일반 국민에게 공개·고지되지는 않습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신상정보등록이 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

성폭력범죄 중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등 일부 범죄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상등록정보가 공개됩니다. 누구라도 성범죄자 알림e(www.sexoffender.go.kr)사이트를 통해 공개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신상정보가 공개되지 않습니다.

신상정보 고지명령을 받은 자의 신상정보는,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곳 아동·청소년의 보호자나 학교장 등에게 우편으로 고지됩니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신상정보를 고지하지 않습니다.



Q.36

청소년이 디지털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나요?

A 답변

청소년의 경우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선고할 수는 있지만, 성인이 될 때까지는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선고 되었더라도, 만 19세가 된 후에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는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라 성폭력범죄(아동·청소년 대상 포함), 미성년자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으로서, 디지털 성범죄는 아직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2. 사이버 폭력



2. 사이버 폭력

사이버 폭력이란?

사이버 공간에서 다양한 형태로 타인에게 가해지는 괴롭힘으로, 전통적인 폭력과 달리 문자로 험담, 특정인을 비하하는 글·이미지·동영상 혹은 개인 신상을 유통하는 행위, 따돌리는 행위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 집니다.

■ 사이버 폭력 종류

사이버 모욕

사이버 공간에서 특정인에 대한 직접적인 욕설 또는 모욕적인 말을 게시하거나 작성·유포하는 행위

사이버 명예훼손

특정인에 대한 허위의 글이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사실을 게시하거나 작성·유포하는 행위

사이버 스토킹

SNS, 메신저 등을 통해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접근을 지속적으로 시도하여 괴로움을 주는 행위

사이버 성희롱

피해자의 일상적 사진을 성적인 사진과 합성 후 유포(지인능욕)

사이버 불링 -bullying

특정인을 대상으로 지속적·반복적·의도적으로 가해지는 행위로 개별적인 가해행위는 심각한 것이 아니어서 사소한 것으로 비칠 수도 있으나 피해자는 지속되는 가해행위에 대하여 공포심·불안감을 느끼게 되어 더욱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음



적용법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71조, 74조
- 형법 제283조(협박), 제307조(명예훼손), 제311조(모욕) 등





Q.1

제 친구의 Facebook 메신저로 모르는 사람이 연락이 와서 저와 성관계를 했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학교에 소문이 퍼져서 너무 괴롭습니다. 남성을 찾아서 처벌할 수 있을까요?

A 답변

네 가능합니다.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 거짓인 내용을 기재해서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 메신저를 받은 친구에게 그 내용을 캡처해 달라고 부탁하고, 메신저 계정이 누구의 소유인지 페이스북을 통해 확인하여 증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증거가 없더라도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나, 가해자를 찾기 위해서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설

Explanation

● 사이버 명예훼손이란?

누군가를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에 사실을 드러내어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되는 것을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유사질문

단톡방에서 제 이름을 직접적으로 거론은 안했는데(은유나 암시로) 누가 봐도 저라는 걸 알 수 있게끔 외모 비하 글을 올려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단톡방에서의 내용, 상황을 종합해 볼 때 그 방에 있는 누구라도 외모 비하의 대상이 피해자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면 피해자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모 비하의 글을 올린 경우 글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Q.2

사이버 상에서 욕설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A 답변

인터넷 상에서 욕설을 하면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례1)

법원은, 피고인이 인터넷 자유게시판에 '이거 안가면 마**씨같은 한남충한테 임신공격당하고 결혼함'이라고 기재한 사안에 대해, '한남충'에서 '충'은 벌레라는 뜻으로 부정적인 의미가 강한 점, '마**씨'는 피해자의 필명인 점 등에 비추어 위 문구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모욕의 고의도 있다고 하여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사례2)

법원은 특정문장을 반복하여 쓴 다음, 그 위에 '김치녀'를 의미하는 김칫국물을 떨어뜨린 후 이를 촬영하여 본인의 SNS에 게재한 뒤 피해자의 SNS주소를 해시태그한 사건에서 모욕죄를 인정했습니다.



Q.3

친구 굴욕 사진을 장난으로 인터넷에 올려도 되나요?

A

답변

안됩니다. 인터넷처럼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 친구의 수치스러운 사진을 게시하면 모욕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은 시장이나 쇼핑센터 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된 장소입니다.

그런 곳에 친구의 이미지를 나쁘게 만들거나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사진을 올리는 것은 형법 제311조에 따른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Q.4

반톡에서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모두가 눈물 표시(눈물)로만 답해요...제가 사이버 폭력을 당하고 있는 건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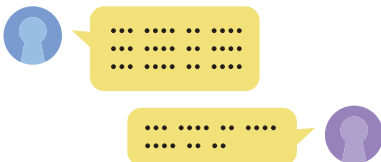
A 답변

네. 위와 같은 예시도 사이버 폭력에 해당합니다. 직접적인 욕설이나 비방이 아니더라도 이모티콘으로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사이버 불링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 해설 Explanation

사이버불링(cyber bullying)이란?

사이버 공간에서 특정인을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욕설, 험담 따위로 집요하게 괴롭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교묘하고 은밀한 학교 폭력 '사이버불링'

한 여고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선배와 친구들이
여고생을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부모와 학교 선생님들은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스마트폰 채팅방에서
괴롭힘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사례)

중학생 이00(13세, 여)는 같은 학교 학생들에게 매일 모바일메신저에 강제로 초대되어 욕을 들었습니다. 이00는 죽음을 생각할 정도로 괴로움과 공포에 시달렸지만 가해 학생들은 '재미'로 시작했다고 합니다.

“누가 초대해서 욕을 해달라고 하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장난이었어요. 딴 애들도 다 하니깐”



Q.5

게임 채팅방에서 제 닉네임에 어떤 사람이 계속 악플을 달아요. 처벌받게 할 수 있나요?

A 답변

네.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디나 닉네임 대상으로 악플을 달았더라도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되거나 채팅방에 접속해 있던 사람이 피해자와 친분을 유지하고 서로 이름과 나이, 연락처를 알고 있어서 실제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악플의 내용에 따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또는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

법원은 게임채팅방에서 피해자 아이디를 지칭하며 욕설을 한 게임 이용자에 대해 모욕죄를 인정, 벌금 3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채팅방에 접속해 있던 다른 사람들이 피해자와 함께 게임하며 친분을 유지하고 있었고, 서로의 이름이나 나이, 연락처 등을 알고 있었다.”며 실명이 적시되지 않았어도 게임 이용자들이 피해자 아이디를 사용하는 실제 인물이 누구인지 알아차릴 수 있으면 피해자가 특정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Q.6

친한 친구들끼리 단톡방에서 단톡방에 없는 다른 애를 욕했는데, 그런 것도 사이버 폭력인가요?

A 답변

네. 사이버 폭력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친한 친구들끼리만 단톡방에서 험담을 했다고 하지만, 단톡방에 있는 친구가 언제든지 대화 내용을 유포할 수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단톡방이나 단둘이 참여하는 일대일 채팅방은 대화방에 참여하지 않으면 내용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흔히 개인메신저라고 생각하지만, 대화 내용이 보존되고 손쉽게 복사·유포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Q.7

사이버 폭력을 그만 당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답변

친구에게 위와 같은 행동이 명백한 사이버 폭력이고 범죄임을 알리고 중단하도록 말해야 합니다.

싫다는 의사표시를 했음에도 사이버폭력을 지속한다면 가족이나 선생님, 1388상담센터 등에 구체적인 사실을 알리고 상담을 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 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처벌받게 할 수 있고,

이후에도 사이버폭력이 계속된다면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에 신고를 하거나 직접 경찰서를 방문해 신고해야 합니다.



해설

Explanation

본인이 사이버폭력을 당했다고 생각된다면 피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저장해두십시오!

스마트폰 메신저 내 메시지의 경우 채팅방에서 나오게 되면 채팅 내역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고, 메신저 회사에서도 서버의 한계로 인해 오랫동안 채팅내역을 보관하지 못하는 일도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복구하기도 매우 까다롭습니다.





Q.8

같은 반 친구를 수시로 반톡에 불러 괴롭혔는데 그 친구가 담임선생님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되나요?

A

답변

사이버공간 상에서 일어나는 따돌림, 폭언 등 사이버 폭력도 학교폭력에 해당됩니다.

폭력이 학교에 신고될 경우,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면 학교에서 학교폭력 전담기구를 통해 자체적으로 사안을 처리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교육자원청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사안을 심의하여 가해 학생에게 서면사과, 보복행위 금지, 학교 봉사, 사회봉사, 전학, 퇴학 등 조치결정을 합니다.



해설

Explanation

●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이란 학교 안이나 밖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학교장의 학교폭력 자체해결

학교폭력의 피해 학생 및 보호자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 아래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 폭력의 경우 학교장은 학교 폭력 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 ☞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 ☞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 ☞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 ☞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지원청 내에 설치된 법정위원회입니다.

●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조치

- ☞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사이버 폭력



- ☞ 피해학생 및 신고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 ☞ 학교에서의 봉사
- ☞ 사회봉사
- ☞ 학내 밖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 출석정지
- ☞ 학급교체
- ☞ 전학
- ☞ 퇴학처분

※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한 조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피해학생에 대해 아래 보호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학교장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해 긴급하다고 인정하거나 피해학생이 긴급보호의 요청을 한 경우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 보호,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할 수 있습니다.

- ☞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 ☞ 일시보호
- ☞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 ☞ 학급교체
- ☞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한 조치



Q.9

친구가 단체톡에 매일 초대되어 따돌림과 욕설을 당해 밖에 나가기도 무서워하고 스마트폰을 볼 때마다 무서워합니다. 친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이 있나요?

A 답변

학교 및 학교폭력 관련 단체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장은 학교에 상담실을 설치하고, 전문상담교사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폭력예방재단, 한국청소년상담원 지역 상담실 및 사이버경찰청 등 각종 청소년 상담기관을 통해서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 해설 Explanation

● 학교 내 학교폭력 전담기구

☞ 교장은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교폭력문제를

사이버 폭력



담당하는 교사) 등으로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를 구성해야 합니다.

- ☞ 전담기구는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와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실시하고, 교장 및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조사결과 등 활동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 ☞ 피해학생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사실 확인을 위해 전담기구에 조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학교 외의 학교폭력 예방 및 상담 단체

기 관 명	홈페이지	상담전화
117학교폭력신고센터	http://www.117.go.kr	☎ 117
청소년폭력예방재단 학교폭력 SOS지원단	http://www.jikim.net/sos	☎ 1588-9128
학교폭력 긴급전화 (전국 시·도교육청)	http://www.wee.go.kr	
여성 긴급전화	http://www.seoul1366.or.kr 지역별 여성 긴급전화운영	☎ 1366



Q.10

중학교 1학년 동생이 같은 반 친구들에게 사이버괴롭힘을 당해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가해자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답변

가해자가 만14세 미만이라면 형사 미성년자로 「형법」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14세 이상 19세 미만이라면 「소년법」과 「형법」이 함께 적용됩니다.

「소년법」이 적용될 경우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사건을 심리⁶하여 아래와 같은 보호처분이 결정되고, 「형법」이 적용될 경우 성인과 마찬가지로 일반 형사재판 절차를 거쳐 형벌이 확정됩니다.

6 심리 : 법원이 민사·형사상의 청구 원인에 따른 증거나 방법 등에 대해 행하는 공식적 심사 행위를 말합니다.



해설 Explanation

● 「소년법」 상 보호처분 종류

- ☞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⁷
- ☞ 수강명령
- ☞ 사회봉사명령
- ☞ 보호관찰관의 단기(1년) 보호관찰
- ☞ 보호관찰관의 장기(2년) 보호관찰
-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위탁
- ☞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 의료 보호시설에 위탁
- ☞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 ☞ 단기(6월) 소년원 송치
- ☞ 장기(2년) 소년원 송치

●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에서의 '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합니다.

7 감호위탁 : '감호'라는 말은 감독하고 보호한다라는 뜻이고 '위탁'은 어떤 사람에게 대신맡긴다는 뜻입니다. 즉 감호위탁은 누군가를 다른 사람에게 보호하고 관리하도록 맡긴다는 뜻입니다.



●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에서의 **부정기형**⁸⁾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⁹⁾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합니다. 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사례)

법원은 친구를 괴롭혀 자살에 이르게 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된 K(16)군에게 징역 단기 2년에 장기 2년6월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미성년이고 비행전력이 없었던 점을 감안했지만 동급생을 위세로 누르고 폭력과 협박을 하면서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에 이르게 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 8 부정기형 : 형의 기간을 확정하지 않고 선고하는 자유형을 말합니다. 소년법에 장기와 단기를 정하는 부정기형을 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형의 단기가 지난 후 나쁜 행동이 바로잡아졌다고 인정되면 형의 집행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 9 유기형 : 무기형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일정한 기간이 정해져 있는 자유형을 말합니다.



3. 디지털 금융범죄



3. 디지털 금융범죄

인터넷 사기

인터넷 사기는 온라인상에서 물건이나 게임 아이템 등을 거래 하면서 상대방을 속여 금전상 이익을 챙기는 행위입니다.

■ 디지털 금융범죄

디지털 금융범죄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피해자의 계좌로부터 자금을 이체 받거나 소액결제가 되게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보이스 피싱	메신저 피싱	몸캠 피싱	파밍	스미싱
수법	전화로 속임	메신저로 속임	악성코드 감염		
피해 내용	자금이체	자금이체	알몸채팅 및 금전요구	정보 및 자금 훔치기	정보 및 자금훔치기, 결제



<p>피싱</p>	<p>전화 또는 E-mail 등을 통해 수사기관 · 정부기관 ·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가짜 사이트로 이용자의 접속을 유도한 후 금융정보 등을 탈취하는 수법</p>
<p>파밍</p>	<p>이용자 PC를 악성코드에 감염시켜 정상사이트로 접속해도 이용자 모르게 가짜 사이트로 유도하여 금융정보 등을 탈취해가는 수법</p>
<p>스미싱</p>	<p>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SMS)를 대량으로 전송 후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여 금융정보 등을 탈취하는 사기수법</p>





Q.1

인터넷에서 중고 거래 시 사기를 당하지 않는 방법이 있을까요?

A 답변

인터넷 중고 거래 시에는 직접 만나 물건의 상태를 꼼꼼히 확인한 후 값을 지불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택배로 거래해야 할 때는 수수료를 부담하더라도 안전결제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청 사이버안전지킴이 홈페이지 (<https://www.police.go.kr>), [인터넷 사기 의심 전화 · 계좌번호 조회]를 통해 거래시 알게 된 상대방 휴대폰 번호나 계좌번호를 조회하여 상대방이 인터넷 사기 경력이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해설

Explanation

● 안전결제 사이트

구매하는 사람이 중개사이트에 대금을 보내면, 보관하고 있다가 물품을 정상적으로 받았음을 확인한 후 판매하는 사람에게 돈을 지급합니다.

다만, 판매자가 가짜 안전결제 사이트 링크를 보내주는 경우도 있으므로, 해당 사이트 URL이 정확한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Q.2

저렴한 쇼핑물을 찾았어요.
쇼핑물이 안전한 사이트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A 답변

안전한 인터넷 쇼핑물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오랜 기간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온 쇼핑물 사이트를 이용하시고 해당 쇼핑물의 구매후기, 게시판 등을 꼼꼼히 살펴보며 정상 운영 여부를 먼저 확인 해 주세요.

잘 알려지지 않은 대행업체나 외국 기반 쇼핑물의 경우,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 (<https://www.hometax.go.kr>)에서 사업자등록 상태를 조회하거나, 서울특별시 전자상거래센터(<https://ecc.seoul.go.kr>)에서 쇼핑물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http://crossborder.kca.go.kr>)의 상담사례/피해예방 정보 코너에서는 해당 사이트의 사기의심 신고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3

중고장터에서 사기를 당했는데 어떻게 신고 할 수 있나요?

A

답변

먼저 부모님이나 주변의 어른에게 자세한 상황을 말씀드려 도움을 청하고, 부모님과 함께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셔서 고소장을 민원실에 제출하면 됩니다.

※ 고소장 양식이나 작성방법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cyber112.police.go.kr/>)

● 사이버 범죄 신고 및 상담

기관명	홈페이지	상담전화
경찰서 사이버안전지킴이	https://www.police.go.kr/www/security/cyber.jsp	☎ 112
인터넷진흥원 보호나라 (해킹상담, 원격점검)	https://www.krccer.or.kr	☎ 118
금융감독원 (피해상담 및 환급)	http://phishing-keeper.fss.or.kr	☎ 1332



Q.4

부모님이 모르게 사기 당한 것을 신고할 수 있나요?

A 답변

미성년자 단독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기를 당했다면 부모님께 솔직히 사실을 말씀드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모르는 상황에서 부모님께서 경찰서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는 경우 많이 놀라시거나 걱정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성년자인 경우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서 원활한 수사를 위해 법정 대리인인 친권자(부모)의 동행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미리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도움을 청하기를 추천드립니다.



Q.5

인터넷 사기를 당해 신고를 했는데 앞으로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A 답변

경찰에 사기 피해를 신고했다면, 피해 진술을 듣기 위해 경찰서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검찰에 사건이 송치된 이후에도 출석하여 피해 사실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고소 접수 후 대부분의 수사과정에서는 신고자가 경찰서에 출석하여 진술 조서를 작성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출석요구가 있으면 편리한 시간을 정해 출석해서 진술하고 증거자료 제출을 하면 됩니다. 미리 피해일시, 금액, 피해경위 등을 6하 원칙에 따라 정리해 가면 조사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조사 이후에는 담당 수사관의 조사를 거쳐 죄의 유무를 판단하고, 범죄가 중하거나 도주·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구속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구속되지 않는 상태에서 관련기록을 모두 검찰에 보내게 됩니다. 이후 결과는 고소인에게 다시 통지해 드립니다.



Q.6

인터넷 사기 피해보상 받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A 답변

사기 피해 시 피해 금액이 소액인 경우 가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¹⁰을 하거나 **소액사건 심판**¹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사기죄로 기소된 경우라면 **배상명령**¹²을 신청 할 수 있고, 상대방에 대하여 **약식명령**¹³이 청구된 경우라면 배상명령신청은 어렵습니다.

- 10 지급명령 신청 : 금전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채권자가 법원에 지급명령에 대한 신청만 하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지급을 명하는 법적 약식 절차를 말합니다. 지급명령 제도는 채무자의 자발적 이행을 촉구하고, 채무자의 수고와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어 주는 제도입니다.
- 11 소액사건 심판 : 3,000 만원이 넘지 않는 소액의 경미한 사건을 손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한 특별 간이 재판을 말합니다.
- 12 배상명령 :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범인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간편한 방법으로 피고인의 범죄행위가 유발한 손해에 대한 민사적인 손해 배상 명령까지 받아낼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 13 약식명령 : 공판(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이 진행되는 것)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서류) 심리만으로 지방법원에서 벌금이나 과료, 또는 몰수형을 부과하는 명령을 말합니다.



Q.7

인터넷 사기 후 돈을 반환해도 사기죄가 성립
되나요?

A

답변

가해자가 인터넷 사기를 범하고 이후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처벌의 수위를 결정할 때 피해금을 반환한 것이 참고될 수 있습니다.





Q.8

디지털 금융범죄 '스미싱'이 무엇인가요?

A 답변

스미싱이란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SMS)를 대량으로 전송 후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여 금융정보 등을 탈취하는 신종사기 수법입니다.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서 발송한 문자라 하더라도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경우에는 클릭하지 마시고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직접 연락하셔서, 문자 발송 여부를 확인하시고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여 프로그램을 설치하셨다면 한국인터넷진흥원 (☎118)에 신고하여 대응 방법을 안내받거나 **폰키퍼**¹⁴ 또는 백신 프로그램을 통해 악성코드 감염 여부를 검증해보아야 합니다.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찰서에서 '사건사고 사실 확인원'을 발급받은 후 통신회사에 제출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폰키퍼 :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배포한 스마트폰 보안자가점검 앱으로 백신 설치 여부, 악성앱의 설치 여부를 점검하는 기능 등을 갖춘 어플리케이션



(사례)

피해자 김모군(16,남)은 "택배가 도착했다"라는 문자를 받았고 이를 클릭하자, 스마트폰에 악성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26만원의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Q.9

디지털 금융범죄 '파밍'이 무엇인가요?

A 답변

파밍은 이용자 PC를 악성코드에 감염시켜 정상사이트로 접속해도 이용자 모르게 가짜 사이트로 유도하여 금융정보 등을 탈취해가는 수법입니다.

파밍사이트에 연결되는 주요 원인은 사용하는 PC가 악성코드에 감염되었기 때문이며, 이 경우 인터넷 주소창에 정상 주소를 입력하더라도 파밍사이트로 연결되게 됩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백신 프로그램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PC 보안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악성코드에 컴퓨터가 감염되었다면 한국인터넷진흥원(☎118)에 신고하여 대응 방법을 안내받거나 가정에서 사용하는 개인PC의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제공하는 PC 원격점검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사례)

이모양(17세, 여)이 쇼핑몰에서 옷을 구입하기 위해 컴퓨터를 통해 어머니 명의의 은행사이트로 접속하자 금융감독원이라며 보안인증이 필요하다는 팝업창이 떴습니다. 그 팝업창을 클릭하자 파밍 사이트로 연결되었고, 이 사이트에서 개인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라는 내용을 보고, 이모양은 의심 없이 관련 정보를 입력했습니다. 이후 한 시간 동안 총 20회에 걸쳐 5,200만원 상당의 금전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Q.10

고액 아르바이트라고 해서 제 통장을 이용해
입금을 받고 입금된 돈으로 게임 화폐를 구입
하는 일을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입금된
돈은 사기 피해자들이 입금한 것이었는데
저도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답변

네. 고액 아르바이트라는 명목으로 유인당하여 사기 등에 통장을 제공하거나
가담했을 경우 사기 방조 내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
니다.

통장이나 카드를 대여하는 행위는 돈을 받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되며, 특히 현금 인출 아르바이트는 범죄에 이용되는
경우가 많으니 조심하세요.



(사례)

A군은 '온라인 게임 시장 운영 관련 재택 아르바이트 구인' 글을 보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곳에서 신분증과 통장을 요구했고, A군은 통장에 입금된 금액으로 게임의 화폐를 구입하는 일을 했습니다.

하는 일에 비해 보수가 좋았지만, 3차례 게임화폐를 구입한 후 A군은 뭔가 불법적인 일 같은 생각이 들어서 아르바이트를 그만둔 후 경찰서 사이버범죄팀에 신고를 했습니다.

담당 경찰관은 계좌를 지급정지 시키고 사기꾼과의 대화내용, 통장내역 등 A군이 확보할 수 있는 증거를 모두 확보해놓으라고 했습니다.

며칠 후 은행으로부터 A군의 통장에 대해 지급정지요청이 왔다는 연락이 왔고, 사기꾼들이 중고나라에서 A군의 이름과 통장을 이용하여 중고물품 사기를 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사기 피해 금액은 1000만원 가량이며 피해 인원은 15명이라는 사실이 확인 되었으며, A군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4. 디지털 저작권



4. 디지털 저작권

저작물 등의 정의

저작물은 시, 소설, 음악, 그림, 컴퓨터프로그램(소스코드) 등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 즉 소설가, 작곡가, 그림 그리는 사람, 코딩한 사람, 사진 촬영자 등을 말합니다.

저작권은 저작물에 대해 주어지는 권리로, 저작재산권(복제권, 전송권 등)과 저작인격권(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으로 나뉩니다.

저작권자는 저작권이 귀속되는 자를 말합니다.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에게 귀속되는데, 그중 저작재산권은 매매, 상속, 이용허락이 가능합니다. 저작재산권이 매매, 상속된 경우 매수인, 상속인이 저작재산권자가 됩니다.

■ 저작물의 종류

저작권법은 제4조에서 저작물의 종류로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저작물,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도형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면 저작물이 되므로, 위 어문, 사진 등도 창작성이 인정되어야 저작물에 해당하며, 위 예시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면 저작물에 해당합니다.

■ 디지털 저작권 관련 단체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등록, 상담센터 운영 및 분쟁조정 진행

상담센터 연락처 : 1800-5455

사이트 URL : <https://www.copyright.or.kr>

한국저작권보호원

온·오프라인 불법복제물 신고·관리, 심의 및 모니터링, 불법 복제물 추적 관리시스템, 해외 저작권보호 동향 및 저작권에 관한 정보제공

사이트 URL : <https://www.kcopa.or.kr>

그 외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사이버수사대

■ 디지털 저작권 침해 시 구제 방법

형사적인 방법으로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하지만, 저작권 침해가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행한 경우 등에 해당되면 6개월이 경과 하더라도 고소가 가능합니다(저작권법 제140조,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민사적인 방법으로

침해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거나 침해정지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저작권법 제123조),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권을 침해한 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1

아이돌 안무를 따라 추는 댄스커버 영상을 올리려고 하는데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나요?

A 답변

네. 안무도 연극 및 무용·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에 속하는 저작물로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튜브에 댄스커버 영상을 올릴 때는 안무 저작권도 주의해야 합니다.

(사례)

댄스학원이 4인조 여성 그룹 시크릿의 샤이보이 안무를 이용한 교육 장면을 촬영해 해당 영상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해당 안무가는 댄스학원 측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샤이보이의 안무를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로 인정했고, ① 댄스학원이 안무를 사용한 것이 교육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주된 목적이 상업적·영리적인 점, ② 안무 전체를 이용한 점, ③ 동영상상 게시함으로써 안무가의 안무 강습행위에 대한 현실적·잠재적 수요가 대체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댄스학원의 행위는 저작권법 제28조의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해당하지 않고 저작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Q.2

거리 풍경을 촬영하다 찍은 다른 사람(연예인 등)의 사진을 개인 블로그에 올려도 되나요?

A 답변

안됩니다. 사진을 내가 촬영했다면, 해당 사진의 저작권은 나에게 있으므로 저작권법상의 문제는 없지만, 초상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써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가 나에게 사진 찍어 달라고 요청한 경우에도 이를 이용하려면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E 해설 Explanation

● 사진이나 영상의 촬영대상이 사람인 경우, 초상권에 유의해야 합니다.

☞ 연예인의 경우, 방송국 앞에서 기다리다가 걸그룹의 사진을 찍어서 블로그에 올리는 정도는 허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걸그룹은 이미 얼굴과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고 블로그에 올리는 등 게재 행위를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팬으로서 단순히 업로드 한 수준이 아니라 악의적으로 비방하거나 상업적·영리적으로 사용한다면 묵시적 동의 범위를 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게 됩니다.

☞ 일반인의 사진은 연예인보다 초상권 침해가 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만약 일반인이 원치 않는데 촬영되어 유튜브 등에 게시까지 되는 상황이라면 해당 영상을 차단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 신고, 법적인 조치도 가능합니다.



Q.3

내가 만든 영상을 내 유튜브에 올렸는데 저작권 등록을 따로 한 적은 없습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내가 만들었더라도 나에게 저작권이 없는 것인가요?

A 답변

저작물을 등록하지 않아도, 사람들에게 볼 수 있도록 공표하지 않았더라도, 저작권은 발생합니다.





해설

Explanation

● 저작권

☞ 저작권 발생

저작권법 제10조에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물을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저작권이 발생합니다.

☞ 저작권 등록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지만, 등록을 해 두면 등록된 연월일에 저작물을 창작, 공표한 것으로 추정되고, 성명이 등록된 저작자가 진정한 저작자인 것으로 추정을 받는 효과 등 이점이 있습니다. 저작권 등록은 한국저작권위원회(사이트 URL : <https://www.copyright.or.kr>)에서 담당하고,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 저작권 공표

저작자는 공표여부, 공표시점 등을 결정할 수 있는 공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튜브에 올렸는지 여부(공표했는지 여부)가 저작권 발생의 요건은 아닙니다.

다만, 공표하지 않을 경우 침해물보다 먼저 창작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자신의 이메일 등으로 보내는 등 조치를 하면 좋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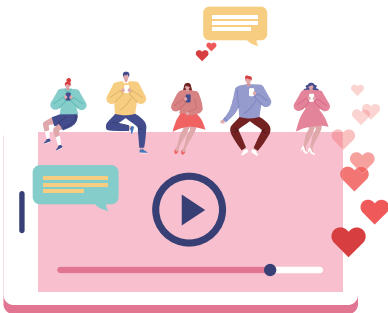
Q.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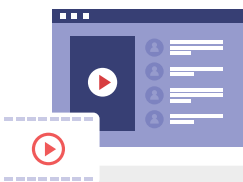
어린 동생이 노래 부르는 장면이 너무 귀여워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저작권 침해인가요?

A 답변

네.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이 게시물의 주된 내용이고, 인용한 노래는 창작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일부 인용하였으며, 출처를 표시했다면 공정이용에 해당할 수 있지만, 인용한 노래가 게시물의 주가 되거나 인용한 부분이 많은 경우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례)

블로그를 운영하는 아버가 5세 딸이 의자에 앉아 '미쳤어'를 부르면서 춤을 추는 것을 촬영한 53초 분량의 동영상을 딸의 다른 사진과 자신이 작성한 글과 함께 블로그에 게시했는데,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저작권 침해로 이유로 복제 전송의 중단 조치를 요구하면서 법정 분쟁에 휘말렸습니다.

법원은,

- ① 게시물이 손담비를 흉내내는 딸의 모습을 생동감 있게 표현한 창작물이며, 대중매체가 어린이들에게 끼치는 영향에 대한 원고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새로운 창작물이 되었고 해당 동영상과 후렴구는 게시물의 일부로 흡수되었으며,
- ② 인용된 양이 전체 74마디 중 7~8마디에 불과하고 녹화 당시 주변의 소음 때문에 53초 분량의 동영상 중 초반부 약 15초 정도만 이 사건 저작물을 부르고 있음을 알아볼 수 있는 점,
- ③ 동영상이 해당 가요에 대한 시장의 수요를 대체하거나 또는 그 가치를 훼손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 ④ 게시물에 음악저작물의 실연자를 언급함으로써 일반적으로 대중가요에서 행해지는 방식의 출처표시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저작권법 제28조의 인용에 해당하여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Q.5

유명한 음악, 영화, 드라마를 패러디해서 영상을 만드는 것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나요?

A 답변

네.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저작물을 패러디할 때 원저작물을 복제, 변형하게 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해설

Explanation

- 저작물 패러디의 저작권 침해
 - ☞ 원저작물을 단순히 변형해서 재현한 것이라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 ☞ 영리적인 목적이 없고, 원저작물에 풍자나 비평 등으로 새로운 창작적 노력을 부가하고, 패러디로서 충분한 변형이 이루어져서 원저작물의 시장 수요를 대체 하지 않을 정도라면 저작권 침해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사례)

음치 가수 ○○수씨가 서태지의 히트곡 컴백홈을 컴배콤으로 바꿔 부르고 패러디라고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법원은, 패러디는 저작물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예외적으로만 허용되며 저작권법 제28조의 취지를 고려하여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하면서

- ① 이 사건의 개사곡은 원곡에 나타난 독특한 음악적 특징을 흉내 내어 단순히 웃음을 자아내는 정도에 그치는 것일 뿐 원곡에 대한 비평적 내용을 부가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 ② 상업적으로 이용하였으며
- ③ 원곡을 인용한 정도가 패러디로서 의도한 바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이고
- ④ 원곡에 대한 사회적 가치의 저하나 잠재적 수요의 하락이 전혀 없다고는 보기 어렵고
- ⑤ 패러디로서 보호되는 것은 해당 저작물에 대한 비평이나 풍자인 경우이고 해당 저작물이 아닌 사회현실에 대한 것까지 패러디로서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 패러디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Q.6

인터넷에서 글을 퍼온 경우, 출처 명시는 사이트 주소를 적어 두면 되나요?

A 답변

네. 인터넷에서 검색된 이미지의 출처 명시는 원래의 이미지가 수집된 웹사이트의 주소를 나타내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본 판례가 있으므로, 인터넷에서 검색한 글의 경우 검색한 웹사이트 주소를 명시하는 것도 적절한 방법입니다.

E 해설 Explanation

● 저작물 출처 명시 방법

저작권법은 출처 명시 방법에 대해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저작권법 제37조 제2항).

따라서 구체적인 방법은 관행을 따르는데, 인용한 저작물에 저작자, 수록 매체 등을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7

출처를 명시하면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이용해도 저작권 문제가 없나요?

A

답변

아닙니다. 출처를 명시했더라도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이용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

해설

Explanation

-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
 - ① 저작권법 제7조에 규정된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 ②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
 - ③ 출처를 명시한 공공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Q.8

수능시험 문제나 교과서 등을 해설하는 영상을 자주 볼 수 있는데 교육 목적으로 공개되어 있는 것이므로 자유롭게 사용해도 되는 건가요?

A 답변

아닙니다. 교육 목적으로 공개된 저작물이라고 해도 저작권자가 이용을 허락한다는 의미가 아니며, 이용금지 표시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용을 허락한다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관련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고 이용해야 합니다.

E

해설

Explanation

저작물은 일기처럼 공개되지 않고 비밀로 보유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작자들은 보통 저작물을 공개합니다.

공개한 저작물이라고 하여 저작권자가 이용을 허락한다는 의미가 아니며, 이용금지 표시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용을 허락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는 교육목적으로 공개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 문제나 교과서에도 창작물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저작권이 있습니다.



수능 기출문제의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평가원 홈페이지에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허락 없이 문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단 복제, 배포, 출판, 전자출판 하는 등 저작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합니다.'라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허락을 받고 이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 043-931-0114)

또한 수능시험 문제나 교과서 등을 해설한 영상에는 수능시험 문제나 교과서 내용 자체 뿐 아니라 강사가 설명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강사가 설명하는 부분도 어문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허락을 받고 이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Q.9

블로그에 사용할 이미지가 필요한데,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이미지는 어떻게 찾나요?

A 답변

① 자유 이용 허락표시(CCL) 등을 표기하여 미리 허락해 놓은 이미지, ② 보호기간 만료 이미지, ③ 기증저작물, ④ 공공저작물 등을 활용하면 됩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운영하는 공유마당(<https://gongu.copyright.or.kr>)과 한국문화정보원이 운영하는 공공누리(<http://www.kogl.or.kr>)에서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이미지, 어문, 음원, 글자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션엘리먼트(www.motionelements.com)'와 같이 유료 회원을 모집하면서, 일부는 무료로 지아이에프(GIF) 등을 제공하는 사이트도 많습니다.



Q.10

개인 채널에서 스포츠 중계 방송을 하고 싶은데 지상파 중계 영상을 수신하여 내 목소리를 더빙하면 문제가 될까요?

A 답변

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상파 방송에서 중계하여 누구나 무료로 시청할 수 있는 스포츠 중계방송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인터넷에서 재송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개인 채널에서 중계하려면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해설

Explanation

● 스포츠 중계영상의 저작권

스포츠 중계영상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스포츠 중계영상은 경기의 매 순간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포착할 것인지 고심하고 다수의 카메라로 앵글이나 줌을 사용하여 경기 장면을 선택하며 슬로우 모션이나 3D캠과 같이 가공된 영상도 첨부되므로 창작성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디지털 저작권



지상파 방송에서 중계하여 누구나 무료로 시청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인터넷에서 재송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컨대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류현진 선수 경기를 보면, '어떠한 형태의 복제, 재전송도 금한다'라는 경고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개인 채널에서 중계하려면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개인이 관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Q.11

현재 게임 방송을 하면서 게임 홍보에 많은 도움을 줬다고 생각하는데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A 답변

네. 게임도 창작물로서 저작권으로 보호되므로, 저작권자인 게임 회사의 이용 허락을 받지 않고 게임 플레이 장면을 방송하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게임 회사 입장에서는 게임이 방송되면 게임이 홍보되므로 게임 방송에 대해 저작권 침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게임 회사가 향후에도 저작권 침해를 문제 삼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게임 회사에게 이메일 등으로 이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전화로 이용허락을 받은 경우 나중에 입증이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이메일, 메시지 등으로 이용허락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게임회사는 홈페이지 등에 미리 게임에 대한 이용을 허락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컨대 게임 '어쌔신 크리드(Assassin's Creed)'와 '파크라이(Far Cry)' 시리즈로 유명한 유비소프트의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몇 가지 조건을 내세우며 유튜브에 게임 영상을 올려도 된다고 공지하였습니다.



Q.12

유튜브나 아프리카TV 저작권 필터링에 걸리지 않았으면 걱정 안 해도 되나요?

A 답변

유튜브나 아프리카TV 등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저작권 보호 정책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일 뿐이며 유튜브나 아프리카TV가 저작권법에 따른 최종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필터링에 걸리지 않았다고 하여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는 '몇 초 이내는 유튜브에 인식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정보를 소개하는 경우가 많은데, 단순히 시간 단위로 저작권 침해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잘못된 정보입니다.

저작권 침해여부는 최종적으로 법원이 판단합니다.



Q.13

취미로 유튜브에 케이팝(K-Pop) 영상을 올렸는데 저작권 침해로 고소되었다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답변

저작권 침해 문제로 내용증명을 받거나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 경우, 당황하지 말고 부모님과 함께 한국저작권위원회 상담센터(1800-5455)에 문의하거나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를 권장합니다.





해설 Explanation

● 청소년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처벌

- ☞ 저작권법 위반 또한 나이와 죄질에 따라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고, 「형법」상의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 ☞ 저작권법 위반자가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면 「소년법」의 적용을 받게 되지만, 14세 이상이라면 「형법」의 적용도 함께 받게 됩니다. 「형법」이 적용될 경우에는 성인과 마찬가지로 일반 형사재판 절차를 거쳐 형벌이 확정됩니다.
- ☞ 다만, 청소년에 대한 저작권법 위반 고소 건수가 급증하고 형사처벌로 위협하며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건들이 많아지자, 청소년에게 형사처벌을 제한하는 별도의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와 '저작권 침해 고소 각하제도' 등이 그것인데, 저작권 교육을 이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거나, 침해행위가 우발적인 경우 조사 없이 각하하는 제도입니다.



Q.14

내가 만든 UCC를 다른 사람들이 자유롭게 쓰게 하고 싶은데, 내가 만든 UCC란 걸 밝혔으면 좋겠고 이것으로 돈을 버는 사람은 허락을 받게 하고 싶어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A 답변

CCL(Creative Common License, 자유이용허락표시)로 이용허락하면 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사단법인 코드(C.O.D.E.) 홈페이지(<http://www.cckorea.org>)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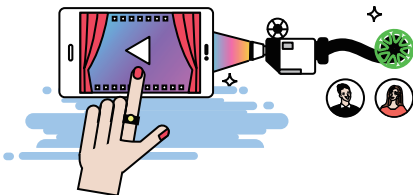
해설 Explanation

● 자유이용허락표시 CCL(Creative Common License)

CCL은 저작자가 일정한 조건하에 자신의 저작물을 다른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라이선스입니다. 저작권자는 6종류의 조건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자유롭게 이용허락 할 수 있고, 이용자가 해당 이용조건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일정한 기호를 저작물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6종류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① 저작자표시
- ② 저작자표시 · 비영리
- ③ 저작자표시 · 변경금지
- ④ 저작자표시 · 동일조건변경허락
- ⑤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동일조건 변경허락
- ⑥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Q.15

내가 만든 UCC가 다른 사람의 저작물과 비슷하다고 저작권 침해 경고장이 왔어요. 나는 그 저작물을 처음 보는데요. 저작권 침해로 처벌 받나요?

A 답변

UCC를 창작하면서 다른 저작물을 보고 하지 않았으면, 설령 두 저작물이 동일유사하더라도 저작권 침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저작권 침해는 다른 저작물을 보고 이에 근거하여 만든 경우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다른 저작물을 보지 않고 창작했는데도 우연히 두 저작물이 유사한 경우라면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 것을 독자적 창작의 항변이라고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UCC를 본 사실이 없다면, UCC를 만든 나는 독자적 창작의 항변을 할 수 있고, 항변이 인정된다면 저작권 침해가 부정되는 것은 물론 나도 UCC의 저작자로서 저작권이 인정됩니다.



Q.16

음원을 블로그의 배경음악으로 이용하려고 합니다. 이때에도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음원사이트에서 돈을 내고 음악을 다운로드한 경우에도 다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A 답변

네. 블로그의 배경음악으로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작사가, 작곡가, 음반제작자 등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유료로 음원을 구입했다라도 이는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대가를 지불한 것이므로 그 범위에서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공간은 사적인 공간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가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으므로 유료로 구매한 음원이라도 블로그에서 이용하는 것은 허락된 이용범위를 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Q.17

가사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가사를 음악저작물에 이용하지 않고 인터넷에 게재하는 때에도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A 답변

노래는 악곡과 가사로 이루어지는데 악곡 뿐 아니라 가사도 저작물로 보호됩니다.

가사를 어문저작물로 보는 견해도 있고 악곡과 결합하여 음악저작물로 보는 견해도 있는데, 어느 저작물로 분류되더라도 저작물로 보호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가사를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적이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가사를 개사하는 경우, 개사한 결과 원래의 가사와는 다른 별개의 저작물이 되었다면 이용허락을 받지 않아도 되지만, 원래의 가사에 창작성을 가미한 정도라면 복제와 마찬가지로 이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가사를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Q.18

해외 음란물 제작업체들이 국내에서 음란물을 공유한 네티즌들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했는데 유통 자체가 금지된 음란물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가요?

A 답변

음란물이라도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저작권법상의 보호대상이 되며, 음란물의 제작 및 유통은 형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으로 제재하게 됩니다.

(사례)

법원은 음란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복제·공중 송신한 사건에서

- ① 저작권법은 표현을 보호할 뿐 아이디어나 사상의 내용을 보호하는 것이 아닌 점,
- ② 음란성 개념은 유동적·상대적인 점,
- ③ 형법 등을 통해 음란물의 제작이나 유통을 처벌하여 사회적 해악을 제거하는 것이 가능한 점을 근거로,

음란물 역시 저작권법상의 보호 대상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Q.19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한 이미지를 친한 친구한테 개인 메일로 전송해도 저작권법에 저촉되나요?

A 답변

소수의 극히 친한 친구 사이와 같이 강한 개인적 결합관계가 있는 경우에 개인 메일로 보내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수가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상 카페, 스마트폰 채팅방, 블로그 등에 업로드 하거나, 인적 유대관계가 없는 카페회원 전체에게 메일링 하는 것은 사적 복제의 범위가 아니므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해설

Explanation

● 사적복제(저작권법 제30조)

☞ 우리 저작권법 제30조는,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사적 복제를 허용하는 이유

- ① 가정과 같이 한정된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이용행위는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할 염려가 적고
- ② 저작권자가 일일이 규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 ③ 자칫하면 개인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Q.20

웹하드나 파일 공유 프로그램을 자주 이용하는데 모두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나요?

A 답변

파일 공유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불법 저작물을 다운로드 할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고, 무분별한 불법 다운로드는 불법 저작물을 확산시켜 저작권자에게 큰 피해를 입히게 되므로 지양해야겠습니다.





해설

Explanation

● 파일 공유 프로그램, 토렌트 프로그램 특성

파일 공유 프로그램,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어떠한 파일을 다운 받는 경우에는 프로그램의 특성상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가 이루어 집니다.

이용자는 단순히 다운로드 받았다고 생각하더라도 다운로드와 동시에 불특정 다수가 다운로드받아 갈 수 있도록 제공되므로, 사적 복제(저작권법 제30조)에서 허용하고 있는 ‘복제’행위 뿐만 아니라 ‘전송’ 행위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일 공유 프로그램이나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불법 저작물을 다운로드 할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 제휴되지 않은 콘텐츠의 경우, 불법 유통되는 저작물일 가능성이 높아 저작권 침해논란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 제휴 콘텐츠는, 해당 콘텐츠의 저작권자와 제휴 계약을 체결해 저작권자에게 일정 비용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제휴 콘텐츠를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이용(사적 복제)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Q.21

유튜브에 업로드 되어 있는 동영상 소스코드를 퍼와서 홈페이지에서 보여줘도 되나요?

A 답변

동영상의 링크(URL)를 공유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동영상을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것이 아니라 동영상으로 찾아가는 주소를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아이프레임(iframe) 소스코드를 게시글에 첨부하여 유튜브 플레이어로 재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유튜브 약관상 허용되어 있습니다.





Q.22

블로그에 내가 좋아하는 화가 이중섭의 작품을 게시하고 싶은데 저작권이 문제되나요?

A 답변

아닙니다. 이중섭 작가는 1956년 사망했고, 현재는 보호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블로그에 게시해도 저작권 문제가 없습니다.

E 해설 Explanation

● 저작권보호기간

저작권보호기간은 원칙적으로 저작자 사후 70년까지 보호됩니다. 저작권법 개정 전에는 저작자 사후 50년까지 보호되었었는데,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법에서는 7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다만, 2013년 7월 1일 이전에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은 다시 연장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작자가 1963년 이전(1962년까지)에 사망한 경우 2012년 12월 31일에 이미 우리나라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보호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보호기간이 연장되지 않습니다.



Q.23

블로그에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을 게시하고, 모차르트 클래식 음악을 배경으로 하고 싶은데 저작권이 문제되나요?

A 답변

빈센트 반 고흐는 1890년 사망해서 저작권의 보호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모차르트 클래식 음악은 모차르트의 저작권은 만료되었더라도, 그 곡을 연주한 연주자와 음반을 만든 음반제작자에게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그 음반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연주자와 음반제작자의 허락을 얻어야 합니다.





해설

Explanation

● 외국인의 저작재산권 보호기간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은, 저작자 사후 50년이 었다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법에서 보호기간이 저작자 사후 7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국가의 경우 저작재산 권 보호기간은 50년 또는 70년입니다.

외국인의 저작물도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보호될 때에는 내국민대우의 원칙에 따라 국내 저작물과 마찬가지로 보호되므로 설령 외국의 보호기간이 우리나라 보다 더 길더라도(예컨대, 멕시코는 100년임) 외국인의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은 저작자인 외국인의 생존+사후 70년이 되며, 예외적으로 저작물의 본국에서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비록 우리 저작권법에서 정한 보호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더라도 국내에서 보호가 종료됩니다.

● 저작인접권 보호

클래식 음악의 경우 작곡자의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클래식 곡을 연주한 실연자와 연주한 음을 음반에 담은 음반제작자에게 저작인접권이 부여되기 때문에 그 음반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연주자와 음반제작자의 허락을 얻어야 합니다.



Q.24

홈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 이용금지 표시가 없는 폰트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사용했는데, 법무법인에서 보낸 내용증명을 받았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답변

폰트파일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 보호받습니다. 법무법인에서 내용증명을 보내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일이 잦은데, 당황하지 말고 한국저작권위원회 상담센터(1800-5455)에 문의하거나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설 Explanation

● 폰트 파일 저작권 보호

법원은 폰트 자체 즉 글자체 자체는 저작물로 보호하지 않고 폰트 파일 (*.ttf 등)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 보호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폰트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한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다른 사람이 폰트 파일을 이용해서 작성한 인쇄물 자체만 받아서 이용한 사람은 폰트 파일을 이용한 것이 아니므로 저작권 침해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며 이용금지 표시를 하는 것이 의무가 아니므로 이용금지 표시가 없었다고 해서 이용을 허락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폰트 파일 이용을 허락한 경우에도, 이용허락 범위를 확인해야 하며 이용허락 범위를 넘어서 이용하면 계약 위반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폰트 파일을 소개하는 곳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운영하는 공유마당(<https://gongu.copyright.or.kr>)과 한국문화정보원이 운영하는 공공누리(<http://www.kogl.or.kr>) 등입니다.



Q.25

내가 유료로 수강하는 인터넷 강의를 촬영하거나 녹음한 파일을 인터넷에 업로드하거나 친구들과 공유하면 저작권이 문제되나요?

A 답변

수험 강의는, 강사가 구체적인 내용을 선택하고 각 쟁점별로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위해 나름대로 준비하여 하는 것이므로, 강의도 어문저작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영상촬영하거나 녹음하여 이용하는 경우, 단순히 자신이 복습을 하기위해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라면 저작권법 제30조의 사적복제로서 허용되나,

이를 넘어서 인터넷상에 업로드하거나 파일로 만들어 공유한다면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게 됩니다.



Q.26

친구와 놀러갔다가 멋진 건축물, 동상이 보여서 사진 촬영했는데, 블로그에 올려도 되나요?

A 답변

네. 건축물이나 옥외에 항상 전시되어 있는 동상의 경우, 이를 촬영하여 인터넷에 게시해도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설

Explanation

●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저작권 보호

저작권법 제35조에서는 '가로·공원·건축물의 외벽 그 밖에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상 전시되어 있는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를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건축물을 건축물로 복제하는 경우, 조각 또는 회화를 조각 또는 회화로 복제하는 경우, 위 개방된 장소 등에 항상 전시하기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판매의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옥외에 전시된 동상이나 건축물 등을 사진 촬영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인데 촬영할 때마다 동의를 구하도록 하는 것은 사회통념에 반하고 저작권자의 이익도 크게 해치지 않기 때문에 두게 된 규정입니다.

- ☞ 건축물이나 옥외에 항상 전시되어 있는 동상의 경우, 이를 촬영하여 인터넷에 게시해도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상 전시되는 것'에 한하므로, 상점 내부나 호텔 로비라운지에 있는 전시품의 경우 밖에서 볼 수 있더라도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판매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5. 부 록



[부록 1]

우리 모두 약속해요, 안전한 온라인 세상

아동·청소년이 알아야 할 디지털성범죄 예방 7가지 안전 수칙

- 나와 타인에 대한 **개인정보**를 올리거나 **전송하지 않습니다!**
- 잘 모르는 사람이 보낸 인터넷 **링크나 파일**을 **클릭하지 않습니다!**
- 타인의 동의 없이 **사진, 영상**을 찍어도, 보내지도, 보지도 **않습니다!**
- 타인의 사진, 영상에 **성적 이미지**를 **합성하지 않습니다!**
- 타인의 사진, 영상을 **퍼트리겠다고 위협하지 않습니다!**
- 잘 모르는 사람이 개인정보는 묻거나 만남을 요구하면 **어른에게 알립니다!**
- 촬영, 유포, 협박 등에서 두려움을 느낄 때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1366

“사진이나 영상의 불법촬영·유포, 이를 빌미로 한 협박,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적 괴롭힘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02-735-9884)**, **여성긴급전화1366(☎지역번호+1366)**, **청소년상담1388(☎지역번호+1388)**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영상물 삭제, 수사 근거자료 수집, 심리치료, 무료 법률 상담 등을 지원합니다.

- ◇ 정부는 디지털성범죄를 엄중 처벌하고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는 등 법·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보호자·아동·청소년을 위한 예방 교육에도 힘쓰겠습니다.
- ◇ 행동 안전수칙은 여성가족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등의 의견을 들어 제작하였으며, 대상 연령 및 학습 현장 등을 고려하여 수칙 내용을 변경해 사용 가능합니다.

우리 모두 약속해요, 안전한 온라인 세상

보호자가 알아야 할 디지털성범죄 예방 7가지 안전 수칙

- 아동·청소년의 온라인 활동에 관심을 갖고 충분한 대화를 나눕니다!
-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올리거나, 타인에게 전송하지 않도록 알려줍니다!
- 불법촬영, 비동의 유포, 성적 이미지 합성 등 디지털성범죄 위험성에 대해 알려줍니다!
- 잘 모르는 사람이 개인정보를 묻거나 만남을 요구하면 반드시 알릴 것을 당부합니다!
- 피해 사실을 알았을 때 아동·청소년의 잘못이 아님을 알려주고 진심으로 지지해줍니다!
- 아동·청소년의 피해사진 관련 증거자료를 수집합니다!
- 피해 사실을 알았을 때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1366

“사진이나 영상의 불법촬영·유포, 이를 빌미로 한 협박,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적 괴롭힘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02-735-9884), 여성긴급전화1366(☎지역번호+1366), 청소년상담1388(☎지역번호+1388)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영상물 삭제, 수사 근거자료 수집, 심리치료, 무료 법률 상담 등을 지원합니다.

- ◇ 정부는 디지털성범죄를 엄중 처벌하고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는 등 법·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보호자·아동·청소년을 위한 예방 교육에도 힘쓰겠습니다.
- ◇ 행동 안전수칙은 여성가족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등의 의견을 들어 제작하였으며, 대상 연령 및 학습 현장 등을 고려하여 수칙 내용을 변경해 사용 가능합니다.



디지털 범죄 적용 법률

적용법률	
법률명	내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카메라등이용 촬영죄)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유포죄)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영리목적 유포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2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적용법률	
법률명	내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가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신중하고 결정하고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음란물 제작죄)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영리목적 음란물 배포죄) ③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음란물 유포죄) ④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음란물 소지죄)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디지털 범죄 적용 법률

적용법률	
법률명	내용
<p>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p> <p>(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p>	<p>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②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p> <p>(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p>	<p>①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발견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즉시 삭제하고, 전송을 방지 또는 중단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였거나 발견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키고자 하였으나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저작권법」 제104조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가 컴퓨터 등에 저장된 저작물 등을 검색하거나 업로드 또는 다운로드를 할 경우 해당 화면이나 전송프로그램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배포·소지한 자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표현된 경고문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p>
<p>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p> <p>(벌칙)</p>	<p>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p>

적용법률	
법률명	내용
<p>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벌칙)</p>	<p>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22조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제23조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의 권리·이익이나 사생활을 뚜렷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제24조, 제24조의2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26조제3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제25조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한 자 제28조의2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훼손·침해 또는 누설한 자 제2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제30조제5항(제30조제7항, 제31조제3항 및 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용한 자 제31조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만 14세 미만인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정보통신망침해죄)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한 자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한 자(정보통신망침해죄) <p>② 제1항제9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p>



디지털 범죄 적용 법률

적용법률	
법률명	내용
<p>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p> <p>(벌칙)</p>	<p>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음란물유도죄)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 삭제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p>② 제1항제3호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p>
<p>형법 제307조</p> <p>(명예훼손)</p>	<p>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형법 제308조</p> <p>(사자의 명예훼손)</p>	<p>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형법 제309조</p> <p>(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p>	<p>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적용법률	
법률명	내용
형법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2조 (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형법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등 사용자)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저작권법 제 123조 (침해의 정지 등 청구)	①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제25조·제31조·제75조·제76조·제76조의2·제82조·제83조 및 제83조의2의 규정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가진 자는 그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를 하는 경우에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또는 이 법에 따른 형사의 기소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원고 또는 고소인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게 하고, 임시로 침해행위의 정지 또는 침해행위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물건의 압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경우에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가 없다는 뜻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신청자는 그 신청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디지털 범죄 적용 법률

적용법률	
법률명	내용
저작권법 제136조 (벌칙)	<p>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저작권법 제140조 (고소)	<p>이 장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제136조제1항제1호, 제13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제124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못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제136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2부터 제3호의7까지, 제13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와 제138조제5호의 경우





□ 참고문헌 및 사이트

- 이승현 외(2015),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유형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9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방송통신위원회
- 학교폭력피해자지원센터 (www.bullyinghelper.or.kr)
- 교육부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사이버폭력 예방 · 대응 가이드
- 클릭! 안전한 사이버 세상으로(2018), 자녀안심국민재단 부설 한국법교육센터
- 청소년의 법과 생활(2019), 법무부/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 국민재단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100문100답 (www.easylaw.go.kr/)
- 인터넷 보호나라(www.boho.or.kr/)
- 김기홍 외(2016), 『Q&A로 알아보는 저작권 상담사례』, 한국저작권위원회.
- 최진원(2019), 『1인 미디어 창작자를 위한 저작권 안내서』, 한국저작권위원회.
- 한국저작권위원회 (www.copyright.or.kr)
- 안전한 온라인을 위한 깨알 가이드 깨톡 (www.teen-it.kr/for-teen)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www.women1366.kr/stopds/)
- 여성폭력 Zoom-in (www.stop.or.kr/women/)
-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www.아인세.kr)



만든 이

정소연(법무부 보호정책과장)

김기환(법무부 보호정책과)

김영준(법무부 보호정책과)

이동준(법무부 보호정책과)

김동하(법무부 보호정책과)

장선영(법무부 보호정책과)

최용철(법무부 보호정책과)

허천영(법무부 보호정책과)

김정호(법무부 보호정책과)

허재벽(법무부 치료처우과)

송한준(법무부 치료처우과)

황규상(법무부 소년보호과)

도움주신 분

김영주(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장)

김진우(법무부 형사법제과 검사)

김영미(법무법인 송인 변호사)

양영화(법무법인 이안 변호사)

안전·배려·공감의 디지털 세상 만들기, 디지털 소통로(law) 중·고등용

발행처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정책과

발행 2020년 4월

디자인 · 인쇄 (주)파스텔북 070-8181-2891

* 이 책의 일러스트, 삽화는 (주)파스텔북에 저작권이 있으며, 저작권자와의 협의없이 이용할 수 없습니다.